
제 48차 임시 이사회

2017. 05. 29

서울디자인재단

제48차 임시이사회 개요

- 일 시 : 2017년 5월 29일(월), 14:00~16:00
- 장 소 : DDP 살림터2층 북세미나실
- 참석대상
 - 임 원 : 15명 (이사 13명, 감사2명)
 - 선임직 이사11 (이사장, 대표이사, 비상임이사8, 근로자이사1), 선임직 감사1
 - 당연직 이사2, 당연직 감사 1
 - 배 석 : 재단 경영단장·본부장, 안건 담당 부서장, 서울시 관계자 등

○ 상정안건

구 분	상정안건	번호	비고
1	2017년 예산 및 사업계획 변경(안)	의안번호 제138호	시장승인
2	보수규정 일부 개정의 건	의안번호 제139호	시장승인
3	인사규정 일부 개정의 건	의안번호 제140호	이사회결의
4	임직원 퇴직금규정 일부 개정의 건	의안번호 제141호	이사회결의
5	이사회운영규정 일부 개정의 건	의안번호 제142호	이사회결의
6	회계규정 일부 개정의 건	의안번호 제143호	이사회결의

○ 보고안건

구 분	보고안건 내용
1	사무위임전결내규 개정의 건
2	기부금관리 및 운영규정 시행 내규 개정의 건
3	신임이사 임명보고

○ 진행순서

순서	시간	내용	비고
1	14:00 ~16:00	이사회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	-
2		상정안건 심의·의결 토의	-
3		보고안건 보고·토의	-
4		폐회	-

목 차

제138호	2017년 예산 및 사업계획 변경(안)	03
제139호	보수규정 일부 개정의 건	33
제140호	인사규정 일부 개정의 건	44
제141호	임직원 퇴직금규정 일부 개정의 건	48
제142호	이사회운영규정 일부 개정의 건	53
제143호	회계규정 일부 개정의 건	56
보고안건	1. 사무위임전결내규 개정의 건	66
	2. 기부금관리 및 운영규정 시행 내규 개정의 건	67
	3. 신입이사 임명보고	69

의안번호	제 138 호
의결연월일	2017. 05. 29

2017년 예산 및 사업계획 변경(안)

제안자	기획경영팀
제안년월일	2017. 05. 29

1. 의결주문

○ 2017년 예산 및 사업 계획 변경 (안)을 다음과 같이 승인한다.

2. 제안이유

○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정관 제 25조에 의거 2017년 예산 및 사업계획 변경(안)에 대해 이사회 심의·의결을 얻고자 함.

3. 주요골자

(1) 서울도시건축 비엔날레 입장료 수입의 세입세출 예산 증액

- 세입세출예산증액 : 59,567백만원 → 60,017백만원(450백만원 증액)

구분		예산(증액)	비고
세입조정	합 계	450백만원	600억 ← 596억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운영수입 입장료 수입	450백만원 450백만원	(세부내역 별첨1 참조)
세출조정	합 계	450백만원	600억 ← 596억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운영비 운영비	450백만원 351백만원	행사장 대관료 지급
	예비비	99백만원	예비비

(2) 예비비 사용을 통한 사업계획 변경

- 예비비 4,393백만원 중 2017년 신규사업 등에 4,110백만원 투자

구분	예산	비고
합계	4,110백만원	(세부내역 별첨2 참조)
DDP 운영 관련 세출	1,870백만원	
전시콘텐츠 기획운영	630백만원	하우스 비전 오프큐레이팅 등
시설안전안심 운영관리	780백만원	간송특수보안, 시설운영비 등
DDP정보화 사업	300백만원	대관시스템 개발
운영경비	160백만원	직원 전문성 향상 교육프로그램
재단운영사업 세출	1,743백만원	
서울, 건축과 디자인의 만남 공간 조성	1,700백만원	서울 건축과 디자인의 만남 공간 조성
운영경비	43백만원	재단 사무기기 유지보수비 등
패션사업 세출	497백만원	
서울패션위크개최	497백만원	패션위크 행사 규모 증가

※ 예비비 증감내역

단위 : 백만원

총계	기존	변경	증감	비고
	4,393	381	△4,012	
DDP	2,024	154	△1,870	
재단	1,872	129	△1,743	
패션	497	-	△497	
건축비엔날레	-	98	98	

※ 건축비엔날레 예비비 : 비엔날레 입장료 수입 금액중 일부금액 예비비로 편입

4. 참고 사항

- 제안근거 :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정관 제 25조(의결사항),
2017년도 서울시 출연기관 예산편성기준
- 절 차 : 이사회 의결 후 서울시장 승인
- 기 타 : 개정안은 서울시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

[별첨1] 2017 세입조정근거

○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세입계획(450,000천원)

- 서울도시건축 비엔날레 기간동안(9.1.~11.5) 발생하는 티켓판매수입
- 유료관람객 20만명, 판매가 9천원 기준

단위 : 천원

	판매가 (A)	관객(명) (B)	판매액 (C)	수수료·부가가치세(D)			순수익 (E=C-D)	비고	
				수수료		부가세 (C×10%)			
				판매대행 (C×11%)	티켓운영				
개 인	일반	9	15,000	135,000	14,850	200,000	13,500	450,170	만 19~64세
	청소년/ 군경	6	20,000	120,000	13,200		12,000		만 13~18세 / 현역 군경
	어린이	5	20,000	100,000	11,000		10,000		만 4~12세
단 체	일반	5	30,000	150,000	16,500	200,000	15,000	450,170	상동 (20인 기준)
	청소년/ 군경	3	40,000	120,000	13,200		12,000		
	어린이	3	40,000	100,000	11,000		10,000		
특 별 할 인	일반	3	10,000	25,000	2,750	200,000	2,500	450,170	만65세이상 1~3급 장애인 및 보호자 1인 기초생활수급자, 문화누리카드소지자
	청소년/ 군경	2	10,000	15,000	1,650		1,500		
	어린이	1	10,000	12,000	1,320		1,200		
가족권 (4인 기준)	20	2,000	40,000	4,400	4,400	200,000	4,000	450,170	4인 기준
VIP/관계자	2	3,000	6,000	660	660	200,000	600	450,170	관계자, 참여작가 한해 특별할인
합계		200,000	823,000	90,530	200,000	200,000	82,300	450,000	십만원이하 절사

[별첨2] 예비비 사용 세부내역

정책사업		단위사업	내 용	금액(천원)	비 고	
D D P 운 영	창의플랫폼 사업	전시콘텐츠 기획운영	협력전시 기획 및 운영	200,000	영디자이너 챗린지, 오픈큐레이팅	
			하우스비전_서울	280,000	미래 도시 공간에 대한 포럼 (서울, 동경, 베이징 참여)	
			컨테나스트 사업운영	150,000	컨테나스트사 디자인교육 시범사업 진행(서울디자인 워크 기간 중)	
	기반운영 사업	시설안전안심 운영관리	시설관리비	259,850	시설관리비, 임대공간 구축, 건축 법정관리 수수료 등	
			시설위탁관리비	520,000	간송문화재단 계약연장에 따른 특수보안 비용	
		DDP정보화 사업	대관 시스템 개발	300,000	대관 진행 관련 예약 및 회계 처리 등의 전산시스템 구축	
		DDP일반관리비	운영경비	160,000	직원 역량강화 교육 -리더쉽교육, 전문직무역량교육 등	
	소계			1,869,850		
	재 단 운 영	서울도시건축 비엔날레	〈서울, 건축과 디자인의 만남〉 공간조성	공간조성 및 운영	1,700,000	〈서울, 건축과 디자인의 만남〉 공간 조성사업
		일반관리비	운영경비	운영경비	43,030	사무용 PC 유지보수비
소계			1,743,030			
패 션 봉 제 사 업	패션기반산업 지원 및 시설운영	서울패션위크 개최	패션위크 행사운영비	497,425	부대행사 규모 및 내용 확대 - 신진디자이너 패션쇼 및 트레 이드 쇼 지원 확대 - 패션 명예 디자이너 전시 - 전용 상품 개발 등	
				소계		
합 계				4,110,305		

2017년 사업계획 변경(종합)

○ 세입내역

구분		2017년 변경	2017년 당초	증감액
세입총계		60,017,407	59,567,407	450,000
영업수익		20,011,960	20,011,960	-
	자체수입수익	20,011,960	20,011,960	-
	DDP 운영수입	17,832,960	17,832,960	-
	디자인문화상품판매수입	200,000	200,000	-
	서울패션위크 운영수입	1,649,000	1,649,000	-
	트레이드쇼 운영수입	280,000	280,000	-
	디자인지원센터 운영수입	50,000	50,000	-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운영수입	450,000	-	450,000
영업외수익		33,576,468	33,576,468	-
	출연금 수익	33,487,868	33,487,868	-
	디자인사업 출연금	6,477,800	6,477,800	-
	패션봉제 출연금	12,009,200	12,009,200	-
	공예사업 출연금	2,250,000	2,250,000	-
	건축비엔날레 출연금	5,500,000	5,500,000	-
	일반관리비 출연금	7,250,868	7,250,868	-
	기타수익	88,600	88,600	-
	이자수익	88,600	88,600	-
	기타수익	-	-	-
전기이월금		5,978,979	5,978,979	-
	DDP 이월금	2,342,703	2,342,703	-
	패션봉제 이월금	677,425	677,425	-
	재단운영 이월금	2,958,851	2,958,851	-

○ 세출내역

구분		2017년 변경	2017년 기존	증감액
세출총계		60,017,407	59,567,407	450,000
DDP		20,021,810	18,151,960	1,869,850
	창의플랫폼사업	1,749,000	1,119,000	630,000
	전시콘텐츠기획운영	1,030,000	400,000	630,000
	교육콘텐츠기획운영	400,000	400,000	0
	유니버설디자인체험스팟	319,000	319,000	0
	상생협력사업	500,000	500,000	0
	대관및해외유치마케팅	100,000	100,000	0
	DDP멤버십운영	50,000	50,000	0
	DDP마케팅프로모션	350,000	350,000	0
	기반운영사업	17,772,810	16,532,960	1,239,850
	시설안전안심운영관리	12,362,810	11,582,960	779,850
	DDP정보화사업	1,300,000	1,000,000	300,000
	DDP일반관리비	4,110,000	3,950,000	160,000
	패션봉제사업		14,615,625	14,118,200
	패션기반산업지원및지원시설운영	13,615,625	13,118,200	497,425
	패션지원센터운영	3,427,500	3,427,500	0
	서울패션창작스튜디오운영	425,500	425,500	0
	서울모델리스트콘텐츠트개최	150,000	150,000	0
	동대문패션상권활성화지원	1,810,000	1,810,000	0
	봉제교육운영	150,000	150,000	0
	서울패션워크개최	5,852,625	5,355,200	497,425
	트레이드쇼개최	1,100,000	1,100,000	0
	지속가능패션봉제허브운영	700,000	700,000	0
	패션산업글로벌마케팅지원	1,000,000	1,000,000	0
글로벌패션브랜드육성지원	700,000	700,000	0	
해외전시회참가지원	300,000	300,000	0	
재단운영		24,998,491	22,904,068	2,094,423
	디자인생태계조성	5,683,800	5,683,800	0
	디자인전시참가지원	400,000	400,000	0
	디자인창조기업육성(DMC)	481,000	481,000	0

구분		2017년 변경	2017년 기존	증감액
	서울디자인워크 개최	1,572,800	1,572,800	0
	서울디자인컨설팅트운영	100,000	100,000	0
	우수디자인상품판매활성화	700,000	700,000	0
	도심공공안전안심디자인	250,000	250,000	0
	도시재생연계공공미술사업	1,680,000	1,680,000	0
	동대문문화벨트조성	200,000	200,000	0
	도심창조산업디자인사업	300,000	300,000	0
시민디자인사업		1,674,000	1,674,000	0
	디자인교류	650,000	650,000	0
	스마트모빌리티디자인혁신	500,000	500,000	0
	시민디자인연구	524,000	524,000	0
공예문화사업활성화		2,250,000	2,250,000	0
	공예디자인사업	2,250,000	2,250,000	0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7,731,393	5,680,000	2,051,393
	건축비엔날레	6,031,393	5,680,000	351,393
	서울, 건축과디자인의만남	1,700,000	0	1,700,000
일반관리비		7,659,298	7,616,268	43,030
	인건비	4,789,271	4,789,271	0
	운영경비	2,310,210	2,267,180	43,030
	성과급	559,817	559,817	0
예비비		381,481	4,393,179	△4,011,698
	DDP 예비비	153,853	2,023,703	△1,869,850
	패션봉제 예비비	0	497,425	△497,425
	재단운영 예비비	129,021	1,872,051	△1,743,030
	도시건축비엔날레 예비비	98,607	0	98,607

신규	전시콘텐츠기획운영(협력전시)
-----------	------------------------

1	예산(안) 설명
----------	-----------------

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2017 당초 예산(A)	2017 변경 예산(안) (B)	증감 (B-A)	(B-A)*100/A
-	200,000	200,000	100%

예산(안) 요구내역 및 산출근거

과 목 구 분	2017년 본예산	2017년 변경예산(안)	증감사유
영디자이너 챌린지	-	전시기획 1,500천원 · 전시기획회의 : 500천원 · 자문회의 : 1,000천원 아카이빙 8,500천원 · 인쇄물 기획·제작 : 5,500천원 · 영상기록 : 3,000천원 전시장 구축 60,000천원 · 전시장구축 및 철거 : 55,000천원 · 작품운송 (반입, 반출) : 3,500천원 · 전시장보수 : 1,500천원 행사 운영 30,000천원 · 개막행사 및 부대행사 : 8,000천원 · 연계프로그램 운영 : 11,000천원 · 서포터즈 운영 : 4,000천원 · 전시운영 인력 : 7,000천원	신규진행
		전시협약 40,000천원 · 전시협약 4회 (콘텐츠 기획 및 전시 구축) 자문 및 멘토링 7,600천원 전시운영 30,400천원 홍보 및 인쇄제작 14,000천원 아카이빙 8,000천원	
오픈 큐레이팅	-		

2	사업설명
----------	-------------

사업목적

- 청년디자이너의 시작을 격려하고 ‘셀프 프로모션’의 장을 마련하여 역량을 갖춘 신진디자이너 발굴
- DDP 콘텐츠·프로그램에 자발적·지속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전문디자이너로 성장할 수 있는 오픈 플랫폼 조성
- 2016년 ‘영디자이너챌린지’에 참가했던 선배디자이너들의 지속적인 활동을 선보이는 특별존을 구성·운영하여 후배디자이너들에게 동기 부여 및 참여자 간 시너지 창출
- 청년 및 신진 디자이너의 창의 아이디어 실현을 위한 플랫폼 마련
- 동대문자원과 지역문화와의 상생을 위한 동대문 콘텐츠 지속 발굴 및 연계
- 오픈큐레이팅 프로그램 특화와 운영 차별화를 통한 브랜드 아이덴티티 확립 및 DDP 24시간 활성화 기여

□ 사업내용

○ 영디자인너 챌린지

- 둘레길 영디자인너 작품 전시

- 1) DDP에서 영디자인너들의 작품을 일반 대중에게 선보일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셀프 프로모션의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고 역량을 갖춘 디자인너를 발굴하는 장 마련
- 2) 수도권 디자인 대학에서 전국 단위로 확대 및 사전 공모를 통해 우수한 졸업작품 전시

- 연계프로그램 진행

- 1) 디자인전문가로서 성장하도록 장려하기 위한 사교의 확장, 레퍼런스 교환, 디자인프로젝트에 관련 모티베이션 교환의 장 마련
- 2) 디자인 전 분야를 대상으로 구성하여 분야별 교차 네트워크형성의 장 마련
- 3) 장르를 넘어서는 전문가들의 피드백 및 주제 토크쇼를 통해 청년디자인너에게 동기부여

- 전국단위 참가신청 플랫폼 구축

- 1) 온라인 디자인플랫폼과 협력하여 전국단위 디자인대학 졸업예정자의 자발적 참가신청 유도
- 2) 청년디자인너들과 디자인관련 종사자들 간 온라인 상시개방 접촉기회 마련
- 3) 전시기간 이외 청년디자인너들의 포트폴리오 및 예비디자인너들의 연계프로그램 활동을 온라인 플랫폼에 공유하여 ‘영디자인너챌린지’ 진행과정 지속 노출

- ‘영디자인너챌린지’ 브랜딩

- 1) ‘영디자인너챌린지’ 선배 참가자 선별 및 모집하여, 사회진출 이후에도 후배들과 지속적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전시섹션 구성
- 2) 졸업작품을 준비함에 성장과정을 스토리화한 기록물 및 도록물을 통하여 연도별 설정되는 주제간 시퀀스 형성
- 3) ‘영디자인너챌린지’의 참여 충성도 형성을 위한 우수작품 및 참여자 시상

○ 2017 DDP 오픈큐레이팅

- 기 간 : 2017.05~12

- 장 소 : 갤러리문(341m²), 디자인 둘레길 도입부(360m²), 둘레길 쉼터(470m²)

- 사업내용 : 공모를 통해 DDP와 공동기획 대상 4개 전시기획제안 선정

- 모집대상 : 전시·행사 기획 및 실행이 가능한 단체 또는 개인

※ 청년 및 신진 디자인너·작가·기획자 참여시 우선선발)

※ 청년 및 신진 디자인너 : 학생(학부, 석사, 박사 포함) 또는 대학 졸업 10년 미만

- 멘토링 및 컨설팅 시스템: 2015, 2016 오픈 큐레이팅을 통해 배출한 큐레이터의 멘토링과 컨설팅을 통해 청년 및 신진 디자인너의 부족할 수 있는 실행력 보강 및 연대 강화

□ 2017년도 추진방향 및 추진일정

사업추진절차		추진기간	예산집행계획	추진세부내용
계		2017.04~12	200,000천원	
영 디자이너 챌린지	디자인대학 예비졸업생 및 작년도 선배디자이너 모집	2017.09~10	3,000천원	·모집 공고 안내물 및 포스터 제작 ·온라인 참가신청 모집 ·각 대학교 게시판 공지요청
	전시 기획 및 구축	2017.09~11	60,000천원	·DDP배움터 둘레길 전시(B2~4F) ·전시구조물 설치 및 철거 ·작품 운송(반입, 반출)
	전시 홍보	2017.11~12	5,500천원	·그래픽 배너 제작, 설치 및 철거 ·전시대 및 물품대여 ·포스터 및 리플릿 제작
	전시 운영	2017.12	30,000천원	·개막행사 및 부대행사 ·서포터즈 운영 ·전시 운영 인력 ·영상 및 사진 아카이빙 ·참여디자인대학(청년디자이너)대상 전시 연계 프로그램 진행
	사후 자문회의	2017.12	1,500천원	·자문위원 회의 ·만족도 및 발전방향 도출
오픈 큐레이팅	콘텐츠 기획	2017.04~.05	7,600천원	심사비 및 멘토링비
	전시 협약(4회)	2017.05	40,000천원	협력대상자 선정 및 계약 체결
	전시운영	2017.06--11	30,400천원	운영인력 및 전시안내 사인 제작
	홍보 및 인쇄제작	2017.06~11	14,000천원	리플렛, 포스터 인쇄제작
	아카이빙	2017.11	8,000천원	영상기록

3

사업효과

최근 3년 추진실적

2014년도	·운영하지 않음
2015년도	· 서울디자인위크 내 대학별 구성 · 11개 대학, 산업디자인 학과로 제한 (139작품) · 지도교수 중심의 일괄적 참여 · 실험적, 혁신적 주제 전시를 통한 디자인의 사회적 역할기여 - 기존의 전시와 다른 새로운 재미 제공 · 사회적 이슈 및 대중적으로 친숙한 콘텐츠로 전시 흥미 유발 · 총 2개 전시, 관람객 9,119명
2016년도	· ‘영디자인챌린지’ 사업 네이밍 추진 · 20여개 대학, 50여개 디자인전공 분야로 확대 (178작품) · 청년디자이너 기획단 운영 · 야간 운영을 통한 관람객 증대 및 야시장 프로젝트와의 연계를 통해 풍부한 콘텐츠 제공, 일일 평균 관람객 180% 증가 · 총 3개 전시, 관람객 20,602명

향후 기대효과

- 대학생 졸업작품을 매개로 예비디자이너의 성장과정을 아카이빙, 공론화기회 마련
- 민,관,학 등 다양한 주체들에게 디자인대학 졸업작품을 매개로 디자인영역의 확장성을 선보이도록 하며 예비디자이너를 육성하는 DDP정체성 형성에 기여
- 연도별, 주제설정을 통한 체계적 추진으로 ‘영디자이너챌린지’ 브랜딩화를 통해 인지도 상승 및 충성도 높은 참여자 확보
- ‘오픈큐레이팅’을 통한 청년 및 신진디자이너 발굴과 육성
- ‘동대문 시장’을 주제로 한 기획공모를 통해 동대문 지역성이 반영된 콘텐츠 개발
- 전문 전시 공간의 개발 (갤러리문 외 둘레길 쉼터, 디자인둘레길 도입부 확대)

신규	전시콘텐츠기획운영(하우스비전, 컨데나스트)
-----------	--------------------------------

1	예산(안) 설명
----------	-----------------

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2017 당초 예산(A)	2017 변경 예산(안) (B)	증감 (B-A)	(B-A)*100/A
-	430,000	430,000	100%

예산(안) 요구내역 및 산출근거

과 목 구 분	2017년 본예산	2017년 변경예산(안)	증감사유	
하우스비전	세미나 행사홍보비	0	80,000천원 - 국내외 연사 초청비 : 40,000천원 - 행사장구축 : 20,000천원 - 행사운영비 통역 및 시스템구축 : 13,000천원 - 식비 및 다과비 : 2,000천원 - 행사 예비비 : 5,000천원	
	집행운영위 행사운영비	0	65,000천원 - 기자간담회 및 설명회 운영 · 운영비: 10,000천원×2회=20,000천원 - 행사자료 (한중일)번역=25,000천원 - 기타 :사업 취재 및 인터뷰 지원=20,000천원	
	홍보물 제작 및 관리	0	79,000천원 - 인쇄홍보물 제작: 28,000천원 - 사진 촬영: 3,000천원×7회=21,000천원 - 동영상 제작: 3,000천원×10회=30,000천원	
	여비	0	36,000천원 - 해외 일본집행위 초청비 · 항공료 (도쿄-서울 왕복,이코노미) :8,000*2*2=32,000천원 · 숙박(200*4박*5인): 4,000천원	
	임차료	0	20,000천원 - 행사대관료 : 5,000*4일 =20,000천원	
	소계		280,000천원	신규사업
컨데나스트	행사홍보비	0	108,200천원 - 강사료 · 강사료: 6,030천원(35,000위인) * 11일=66,330천원 - 행사 홍보 · 온오프라인 홍보(참가접수,선발절차): 16,000천원 · 행사 기록(사진,동영상제작): 4,000천원 · 홍보물 제작(배너 등): 2,000천원 - 행사운영 · 현장인력: 300천원*5명*11일 = 16,500천원 · 현장 예비비: 3,370천원	
	여비	0	13,800천원 강사 초청비 · 항공료(상해-서울왕복,이코노미): 600천원*9인=5,400천원 · 숙박 [(200천원*6박*3인)*2회+(200천원*2박*3인)] = 8,400천원	
	임차료	0	28,000천원 강의 대관료 · 대관료: 2,000천원*14일= 28,000천원	
	소계		150,000천원	

2

사업설명

□ 사업목적

- 해외 네트워크 기반, 건축 디자인 등 유관 전문가 협력을 통해 시민 생활공간의 혁신 및 미래상 제시
- 디자인관련, 당면 사회문제의 도출 및 세미나/오픈 세미나를 통한 담론의 장을 제공
- 컨테나스트 패션저널리스트 수지 멘키스 방한 당시(2015.04) 서울시장 협의사항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패션 분야 협력사업 연계 추진
- 해외 유명 기관 협력, 재단의 플랫폼을 활용한 자체 파일럿 프로그램으로서의 교육 코스 시범 운영
- 17년도 시범운영 통한 차년도 정규 프로그램 진행 시장성 및 타당성 분석

□ 사업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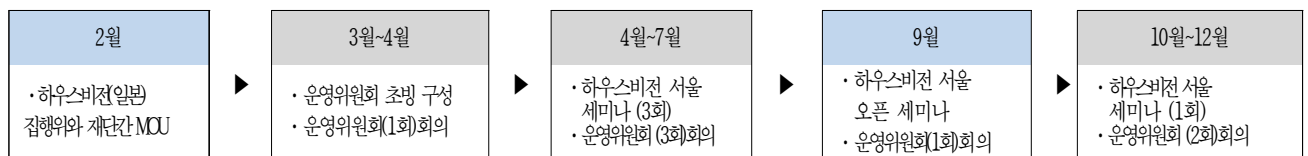
- 2017년 하우스비전
 - 기 간: 2017년 4월~ 12월 (세미나 5회, 오픈세미나 1회, 운영위원회 및 집행위원회 각 7회)
 - 사업내용: 건축, 디자인, 인문학, 사회과학, 비즈니스, IT 등 다양한 측면에서 한국의 도시가 갖고 있는 현재의 문제를 도출하고 서울 이라는 메가시티에서 구현 가능한 미래주거에 대한 패러다임, 솔루션 등에 관한 논의를 오픈 세미나를 통해 진행하고, 그 결과를 심포지엄과 출판물 통해 공유
 - 프로그램
 - 1) 도쿄와 베이징 등 아시아도시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미래형주거환경(하우스비전)포럼의 서울버전 진행
 - 2) 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세미나 진행과 동시에 협찬기업을 모색하고, 회의주제 구체화

하우스비전_일본

- 행사개요 : 2011년 하우스비전 운영포럼 시작 (연간 12회 이상)
2013년, 2016년 2차례 하우스비전 전시 개최
- 일본, 중국, 말레이시아 등 7개 아시아 네트워크를 구축, 디자인과 건축을 통해 인간의 미래형 주거환경을 전망하고 개인과 타인의 가치를 공유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문화 전략 프로젝트
- 일본 총괄디렉터 및 큐레이터 : 하라켄야 (Hara Kenya), 사다오 쓰치야(Sadao Tsuchiya)

1차 (2011년 ~ 2013년, 2년)			2차 (2013년 ~ 2016년, 3년)		
하우스비전 <앞으로의 집>			하우스비전 <Co-DIVIDUAL>		
					
2011	3-8월	세미나 (10회)	2013~ 2014	5-12월	세미나 (13회)
2011	10월	심포지엄		1-12월	세미나 (25회)
2012	5월	심포지엄 책 출간	2015	1월	심포지엄
2013	3월	전람회-7개 테마		5월	심포지엄 책 발간
			2016	6월	전람회-12개 테마

- 2017년 하우스비전_서울



○ 컨테나스트 디자인교육

- 기 간: 2017년 9월 21일 ~ 27일

- 프로그램

1) 컨테나스트 패션&디자인센터 단기 커리큘럼 시범운영

· 5일 코스 2회, 1일 코스 1회 선별적 운영

※ 5일 코스 예시(상해 컨테나스트센터 실제 운영 단기코스)

연번	코스명	기간
1	Overview of the Fashion Business	25시간(5일)
2	Fashion and the Digital Works	25시간(5일)
3	3 Easy Pieces	30시간(5일)
4	Little Black Dress	30시간(5일)

2) 강사초빙 : 현지 동일 커리큘럼 담당 강사 초빙운영

3) 수강인원 : 코스 별 각 20명

· 커리큘럼 별 개인 창업 디자이너, 일반 시민 대상 참가모집 공고 후 20명 선발

· 수강료 : 50,000원 ※ 상해 현지 수강료 = 약 1,350,000원(5일 단기코스 기준)

4) ddp 나눔관, ddp 드림랩 등 기존 인프라 시설 활용

5) 유치 후 운영관련 사업부서 이관 등 별도 내부 조정

컨테나스트 패션&디자인 센터

- 시설개요: VOGUE, QQ 등을 발간하는 글로벌 매거진 그룹 컨테나스트(Conde Nast)에서 중국 상해에 설립한 패션 산업 인재양성 시설
- 설립시기: 2015년 11월
- 시설규모
 - 면적 : 1,000m² (강의실, 스튜디오, VMD실, 중앙홀, 미팅룸, 케어룸 등)
 - 운영 인력 22명, 강사진 풀 30만명, 수강생 연간 600여명
- 프로그램
 - 교육 분야 : ① 패션비즈니스&커뮤니케이션 ② 패션 디자인
 - 정규, 단기, 여름집중코스 약 20여개
 - ZARA, MANGO, SWAROVSKI, BURBERRY 등 국제적인 유명 패션 브랜드와의 협력 프로그램 진행
- 주요 특징
 - 디자인, 비즈니스&커뮤니케이션 두 개 분야로 운영
 - 일반인이 쉽게 패션디자인을 접할 수 있는 다양한 단기 코스 제공

□ 2017년도 추진방향 및 추진일정

사업추진절차		추진기간	예산집행계획	추진세부내용
계(천원)		2017.03~12	430,000천원	
하우스 비전	집행위원회 회의(7회)	2017.03~12	10,000천원	일본 하우스 비전 집행 위원회 초청 및 자문비
	운영위원회 회의(7회)	2017.03~12	30,000천원	분야별 운영위원회 행사 진행 초청 및 자문비
	세미나(5회)	2017.03~12	110,000천원	세미나 운영 및 홍보비용 해외 인사 초청비
	오픈포럼(1회)	2017.03~12	130,000천원	심포지엄 운영 및 홍보(세미나 발제, 원고, 통역, 번역비)해외 인사 초청비
컨데 나스트	협력 대상기관 기초협의를	2016.05~2017.03	-	
	협력 대상기관 업무협약	2017.04	1,000천원	기관 프로그램 교류협력 MOU 체결
	운영 세부 전반 협의	2017.05~06	1,000천원	시범운영 커리큘럼 논의 및 강사초빙 제반사항 합의
	온오프라인 홍보 진행	2017.07~08	14,000천원	프로그램 홍보 및 참가접수 진행
	프로그램 참가자 선발	2017.08	2,000천원	참가접수 마감 및 참가자 선발
	프로그램 운영	2017.09	127,000천원	
	결과보고	2017.10	5,000천원	사업 결과보고 및 행사기록물 제작

3

사업효과

□ 향후 기대효과

- 지속가능한 전문가 포커스 프로그램을 통한 재단에 대한 전문가 층의 기대와 필요에의 부응
- BE_SE_TO(베이징,서울,도쿄)네트워크를 활용한 아시아의 공동 협력을 통해 국제협력 플랫폼 모델로 지속개발
- 재단 연구 및 디자인사업 관계를 통한 지속적인 사업 발굴 및 추진
- 해외 유력 디자인(패션) 교육 프로그램의 DDP 유치를 통한 재단 역할 및 기능에 대한 포지셔닝 강화
- 도입 검토 사업에 대한 시범 프로그램 운영으로, 재단의 다양한 플랫폼에 적용할 수 있는 콘텐츠 다변화 및 검토 사업의 진행 가부에 대한 명시적 근거 확보

변경	시설안전안심 운영관리
-----------	--------------------

1	예산(안) 설명
----------	-----------------

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구분	2017 당초 예산(A)	2017 변경 예산(안) (B)	증감 (B-A)	(B-A)*100/A
시설관리비	4,242,960	4,502,810	259,850	6%
시설위탁관리비	7,340,000	7,860,000	520,000	7%

예산(안) 요구내역 및 산출근거

○ 시설관리비 증감내역 (단위 : 천원)

구분		금액	산출내역
시설관리비 증감총계		259,850	
소모품비	공용소모품구매	5,000	시설공용 소모품 구매
	운영소모품구매	5,000	가구, 휴게실, 안내데스크 등 시설운영 소모품 구매
	소방소모품구매	5,000	소방시설 유지관리 소모품 구매
	안전소모품구매	5,000	안전관리, 안전용품 소모품 구매
	조경소모품구매	5,000	조경시설 유지관리 소모품 구매
	건축소모품구매	5,000	건축시설 유지관리 소모품 구매
	전기소모품구매	5,000	전기시설 유지관리 소모품 구매
	기계소모품구매	5,000	기계시설 유지관리 소모품 구매
	소계	40,000	
수선유지비	전기시설유지보수	10,000	디자인장터 배수펌프 분전함 계장 공사
	소방시설유지보수	16,000	소방시설 안전 미비사항 보완공사
	미디어유지보수	26,000	미디어 운영장비 보수 및 교체
	간접보수공사	20,000	10,000천원 X 2회
	소계	72,000	
지급수수료	법정점검수수료(건축)	27,850	건축철골 모니터링 : 27,850천
	공간코딩	60,000	감정평가(복수감평) 15,000천원X1회 = 15,000천원 공간 철거 및 이전 15,000천원X 2개 공간 = 30,000천원 공간 구축 15,000천원
	소계	87,850	
피부비	시설관리인력피부비	60,000	시설통합사 춘추복 제작
	소계	60,000	

○ 시설위탁관리비 증감내역 (단위 : 천원)

구분		금액	산출내역
시설위탁관리비 증감총계		520,000	
간송보안 비용	보안인력	520,000	54,107,200원 *9개월 + 33,035,200원 *1개월

※2월 11일~3월31일까지 투입되는 인력(공사기간)에 대한 일수계산

2

사업설명

□ 사업목적

- 단계적 계획 수립을 통한 최적의 품질유지
- 내방객을 대상으로 안정적 환경 및 질 좋은 서비스 유지
- 단계별 예산 계획에 따른 운영계획수립으로 시설유지관리업무 체계 확립

□ 시설개요

- 위 치 : 서울시 중구 흥인문로(을지로 7가 2-1번지 일대)
- 용 도 : 문화 및 집회시설 / 다중이용건축물
- 규 모 : 지상4층 / 지하3층, 최고높이 29M
- 면 적 : 연면적(86,574㎡), 대지면적(62,108.7㎡), 건축면적 (25,104㎡)
- 공 간 : 5대 시설 15개 공간

□ 시설유지관리

- 시설위탁용역관리 / 시설관리비 / 제세공과금

분 류	내 용	
시설위탁용역관리	DDP 시설통합 위탁관리	
	DDP 간송보안 위탁관리	
시설관리비	시설유지운영	건축(자동문, 철골모니터링 등) 조경(육상조경, 가로수 유지관리) 기계(열원설비보일러, 냉동기, 공조/환기, 위생설비 등 유지) 전기(태양광, 비상발전기 설비) 소방안전(무인경비, 무전기, 안전활동) 통신(전자교환기, 출입통제, CCTV)
	시설물품구매	건축, 조경, 기계, 전기, 소방, 안전, 주차 등 자재·소모품 구매
	시설수선보수	건축, 기계, 전기 등 시설 전반 보수, 개선공사, 안전시설 보강 등
	정보유지관리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제세공과금	전기요금, 상하수도/도시가스 요금, 전화, 네트워크 공공요금 등	

○ 지급 수수료(공간코딩)

- 신규공간 및 유희공간의 활용 확대를 통해 시민 볼거리 제공 및 체험 가능한 콘텐츠 공간 조성
- 신규발굴공간, 계약갱신 공간, 미임대 공간의 가격 감정평가 진행
- 기존 사용시설 이전 및 철거를 위한 계획 수립 및 실행
- 사용하지 않는 유희공간을 DDP 정체성이 반영된 편의공간으로 변경하여 시민 서비스공간 확대 조성 (수유실, 의무실 등)

□ 시설위탁관리

○ 위탁관리 직군별: 3개 직군(200명)

구분	인프라서비스									안전서비스							환경서비스			비고	
분야	파트장	전기	기계	건축	조경	통신	AV	소방	소계	총괄소장	운영	보안	주차	안내	콜센터	홀매니저	소계	미화	가구관리	소계	총계
인원	1	11	11	7	3	4	4	9	49	1	3	58	9	24	2	3	103	46	2	48	200
업체	씨엔에스자산관리									관우개발							S&I솔루션				
금액	3,878,387천원									6,862,250천원							2,972,930천원			13,713,568천원	
기간	2015.03.01. ~ 2017.02.28.(24개월)																				

○ 인프라 서비스부문 : 52명(전기, 기계, 건축, 조경, 통신, AV, 방재)

- DDP 시설관리 및 운영

건축, 전기, 기계, 소방, 통신, AV, 조경, 공원 등

일상점검, 정기점검, 법정점검, 특별점검, 법정 자격선임 등

○ 환경 서비스부문 : 48명(미화,가구관리)

- 미화, 미화특화서비스

○ 안전 서비스부문 : 100명(운영, 보안, 주차, 안내, 콜센터, 홀매니저)

- 보안, 특수보안, 주차, 안내, 콜센터 관리운영

안전안심 이용 가능한 환경 및 안전서비스 제공

○ 공통업무

- DDP 종합상황실, 종합안내소, 서비스 지원 센터운영

- 각종 계획수립 및 매뉴얼 정비·구축

- 교육·훈련 : CS, 직무, 재난대응 관련 교육 및 훈련

- DDP만의 서비스제공이 가능한 특별화 된 업무직군 개발 및 운영

변경	DDP정보화 사업(대관시스템)
-----------	-------------------------

1	예산(안) 설명
----------	-----------------

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2017 당초 예산(A)	2017 변경 예산(안) (B)	증감 (B-A)	(B-A)*100/A
1,000,000	1300,000	300,000	30%

예산(안) 요구내역 및 산출근거

과 목 구 분	2017년 본예산	2017년 변경예산(안)	증감사유
연구개발비	-	대관시스템 총계 : 300,000천원 ○ 시스템 개발 : 230,000천원 - 대관포털 구축 : 150,000천원 - 대관 모바일 구축 : 50,000천원 - ERP 연계 : 30,000천원 ○ 상용 S/W 구매 : 70,000천원 - WEB 1식 : 10,000천원 - WAS 1식 : 14,000천원 - DBMS 1식 : 20,000천원 - 서버보안 1식 : 6,000천원 - 서버관계 1식 : 6,000천원 - 백업 1식 : 7,000천원 - 문서보안 1식 : 7,000천원	신규

2	사업설명
----------	-------------

사업목적

- DDP 대관 관리 체계를 자동화 함으로써 업무 효율성을 높임
 - DDP 대관업무 자동화 : 대관 관리 행정관리 전반 시스템화 구축
 - DDP 콘텐츠 관리 : DDP 전시행사 콘텐츠를 통합적으로 관리
 - DDP 정보 공유: DDP 전시행사 정보, 일정 등 운영정보 공유
 - DDP 고객관리 : DDP 대관 고객 관리 효율화
 - DDP 미디어 소통 : DDP 콘텐츠를 정보미디어를 통해 확산

사업내용

- DDP 대관 관리 업무 분석, 설계
 - 업무 프로세스 자동화, 콘텐츠 관리, 정보 공유, 고객관리 등 설계
- DDP 대관 시스템 구축
 - DDP 대관 업무 자동화 및 대시민 온라인 서비스 구축
- DDP 홈페이지 커뮤니티 연계 구축
 - DDP 홈페이지 기반, 디자인 콘텐츠 공유, 사용자 참여 플랫폼 구현

2017년도 추진방향 및 추진일정

사업추진절차	추진기간	예산집행계획	추진세부내용
계(천원)		30,000	
기본계획	2017.3.~2017.4.	-	추진계획, 기본설계
사업자 선정	2017.4~2017.6.	-	용역 발주, 사업자 선정
시스템 구축	2017.7~2017.1.2	150,000	사업착수
대관 시스템 오픈	2017.12.	150,000	구축완료, 서비스 개시, 용역 잔금지급

3 **사업효과**

최근 3년 추진실적

2014년도	- DDP 개관(3.21), 홈페이지 신규 오픈 - DDP 업무포털 구축 운영
2015년도	- DDP 대관 업무 프로세스 안정화
2016년도	- DDP 홈페이지를 통한 대관 신청 접수 개시

향후 기대효과

- DDP 대관 관리 업무 효율성 확보 및 대관 고객 편의 제공
- DDP 전시행사 정보의 체계적 관리
- DDP 온라인 대시민 서비스 개선으로 고객 만족도 향상

변경	DDP일반관리비(운영경비)
-----------	-----------------------

1	예산(안) 설명
----------	-----------------

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구분	2017 당초 예산(A)	2017 변경 예산(안) (B)	증감 (B-A)	(B-A)*100/A
운영경비	1,072,403	1,232,403	160,000	15%

예산(안) 요구내역 및 산출근거

내역	금액		산출근거
	기존	변경	
합 계	76,500	236,500	증감금액 : 160,000천원
교육훈련비	76,500	236,500	
교육체계 수립		20,000	1식 * 20,000,000원
전사 월례조회 / 워크숍		23,100	77명 * 150,000원 * 2회
핵심가치 내재화		21,200	1식 * 21,200,000원
계층역량교육		83,000	1식 * 83,000,000원
직무교육		46,200	77명 * 600,000원
공통교육		15,000	1식 * 15,000,000원
전문직무역량		25,000	1식 * 25,000,000원
기타역량강화		3,000	1식 * 3,000,000원

※ 운영비용 증가사유

- 교육훈련비 : 경영평가 지적사항, 서울시 출연기관 컨설팅 결과 교육훈련 프로그램 필요성 대두 (기존 예산서상 리더쉽 교육, 신규직원/퇴직자/승진자 등 대상 교육비용이 책정되지 못함)

변경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개최
-----------	---------------------------

1	예산(안) 설명
----------	-----------------

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2017 당초 예산(A)	2017 변경 예산(안) (B)	증감 (B-A)	(B-A)*100/A
5,680,000	6,130,000	450,000	8%

예산(안) 요구내역 및 산출근거

○ 예산 증감내역

과 목 구 분	2017년 본예산	2017년 변경예산(안)	증감사유
서울도시건축 비엔날레	5,680,000천원	증가금액 450,000천원 ○ DDP대관료 351,393천원 ○ 예비비 98,607천원	입장료수입으로 인한 세입세출규모 조정

2	사업설명
----------	-------------

사업목적

- 세계도시건축 정책의 중심지로서의 서울 도시건축 정체성 확립
- 세계 도시의 도시/건축 현안에 대한 논의를 통하여 건축디자인 정책의 대안 제시
- 서울의 건축/디자인 정책에 대항 대외 홍보 및 국제교류 기회 마련

사업근거

- '14.07 : 민선6기 업무보고 시장요청사항(건축비엔날레 개최)
- '15.12 :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기본계획
- '16.10 :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기본계획

사업내용

- 위 치 : DDP, 돈의문박물관마을 및 도심 중요지역
- 사업기간 : '17.1.1~'17.12.31(제1회 행사개최 '17.9.1~'17.11.5)
- 사업내용 : 서울과 도시들의 도시/건축 현안에 대한 이론적, 디자인적,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전시 및 서울랩 운영

사업계획

- 세계 도시의 도시/건축 현안에 대한 논의 및 대안 제시 주도
- 서울 미래 현안에 대한 디자인/정책 제안 대안 제시

- 시민 및 전문가 참여를 적극 유도하여 공공문화, 국제교류 증진에 기여

□ 추진경위

- '14.07 : 민선6기 업무보고시 시장 요청 사항
- '15.06 : 서울디자인재단 직제 개편(건축비엔날레사무국 신설)
- '15.07 : 서울건축비엔날레사무국 설치 운영계획 수립
- '15.10 :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심포지엄 개최
- '15.12 :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기본계획 수립
- '16.02 :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공동총감독 선임
- '16.03 :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홍보 및 국제교류사업 추진계획 수립
- '16.09 :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기본계획 수립

□ 2017년도 추진일정

사업추진절차	추진기간	추진세부내용
계		
사무국 운영	2017.01~2017.12	서울디자인재단 건축비엔날레사무국 운영
2017 서울비엔날레 개최	2017.01~2017.12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행사 개최 (행사기간 : 2017.9.1~2017.11.5)

3 사업효과

□ 최근 3년 추진실적

2015년도	'15.10 :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국제심포지엄 개최
2016년도	'16.03~'16.12 :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홍보 및 국제교류사업 추진

□ 향후 기대효과

- 시민참여 및 소통확대를 통한 도시 거버넌스 가치 실현
- 건축문화행사 다양화, 활성화를 통한 건축문화 저변 확대
- 글로벌 건축문화 도시서울로서의 위상 제고 및 도시경쟁력 강화

신규	서울, 건축과 디자인의 만남
-----------	------------------------

1	예산(안) 설명
----------	-----------------

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2017 당초 예산(A)	2017 변경 예산(안) (B)	증감 (B-A)	(B-A)*100/A
-	1,700,000	1,700,000	100%

예산(안) 요구내역 및 산출근거

과 목 구 분	내역 및 산출근거	2017년 변경예산(안)	증감사유
구축비용	파빌리온 - 기본 및 실시 설계 / 공간 관련 인·허가 / 조성	550,000	
	인포메이션 - 본청사내 인포네이션 부스 조성	25,000	
	전시컨텐츠 - 인쇄/모형/영상 포함 - 콘텐츠(정책) 선정 / 콘텐츠(정책) 디자인 시각화	420,000	
	프로그램 - 파빌리온 운영 프로그램 기획 - 5개소 및 인포메이션 이벤트 프로그램 기획 - 콘텐츠 운영 체계에 따른 운영 - 공간 설치물 등에 대한 유지 관리 지침 수립	380,000	
임차료	- 전시 및 행사용 장비 임차	38,000	
운영비용	- 기념품 제작 - 사진 및 영상 기록 - 홈페이지 제작 / 운영 - 기타 홍보물 제작	56,000	
	- 결과보고서 제작	6,000	
	- 기획/운영/기술스텝/상주인력 운영 - 회의비 / 자문비 - 공과잡비/소모품비/행사보험료 등	225,000	
합계		1,700,000	

□ 사업목적

-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기간 중 ‘민선5·6기 정책’의 가치와 철학을 ‘도심의 공공공간’에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시민과 입체적·다면적으로 소통·공유
 - 국내외 전문가 및 시민들의 많은 방문이 예상되는 서울비엔날레와 연계하여 시정의 가치와 철학을 건축과 디자인을 통해 표현하고 시민이 입체적·다면적인 체험으로 소통·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서울시정의 가치와 성과를 브랜드화 하고, 새로운 출발을 선언

□ 사업내용

- 개별 사업의 전시 중심 정책 설명 및 홍보에서 탈피
 - 통합적 관점의 담론과 스토리텔링 중심으로 정책 재구성, 다양한 체험전략 기획·운영
 - ※ 「서울공간정책투어(행정2부시장방침45호)」와 연계를 통해 시민들의 다양한 활동 유도
- 민선5·6시 우리시 주요 정책을 주요 콘텐츠로 활용
 - 서울로7017, 마포석유비축기지, 찾아가는동주민센터, 국공립어린이집 +1000, 서울새활용프라자 등
- 종로 주변 공공공간 활용 : 서울비엔날레 행사공간과 연계
 - 돈의문박물관마을(주제전)~DDP(도시전) 사이 종로 주변의 공공공간 및 유휴공간을 네트워크화 하며, 다양한 프로그램의 특성에 맞춰 선정·활용
- 전시공간 조성계획
 - 5개 공간조성 : 3개 반영구, 2개 일시적 → 관광자원 등 활용 적극검토
 - 3개 반영구(전시 및 프로그램 운영) : 역사박물관(기억), 종로타워(소통), 종묘공원(균형)
 - 2개 일시적(소규모 전시) : 탑골공원 주변 공공공간, 종로1길 공공공간 등 활용
- 전시, 운영 프로그램 구성계획
 - 메인주제 : 전환, 서울 (Transit Seoul)
 - 세부주제 : 기억(memory), 소통(communication), 균형(equilibrium)
 - 운영기간 : 서울비엔날레 기간(‘17.9.1~11.6)
- 전시기법 및 콘텐츠 구성·운영(안)
 - 공통 전시기법 : VR 네비게이션 + 디지털 아카이빙
 - VR 네비게이션 : 1인칭 시점 가상현실의 원거리 이동 기법으로, 관객들에게 관람경로를 안내하고 참여 과정에서부터 즐거운 다양한 가상경험을 제공
 - 디지털아카이빙 : 시민의 참여가 아카이빙 되고 동시에 전시아이템이 되도록 구성하여, 축적된 시민들의 의견을 다수가 공유하고 즐길 수 있는 다양한 경험 제공
 - 테마별 전시기법 및 컨셉
 - 테마1 기억- ‘책방’ : 서울책방, 기억서랍, 1,000권의 장서, 북아트 등
 - 테마2 소통- ‘공원, 극장’ : 공원현장중계, 공원놀이100, 어반스테이지, 광장극장 등
 - 테마3 균형- ‘학교’ : 디지털스크린, 디지털 패드, 릴레이 강의, 희망편지 등

추진경위

- '17.03.22 : 시장보고
 - 전시공간 중 일부 영구적 활용 검토→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고려
 - 세미나, 사진전, 투어 프로그램 등 다양한 콘텐츠 구성·운영
- '17.04.14 : 부시장단 연석회의
 - 서울비엔날레와 연계 추진, 관련 실국과의 협조체계 구축
- '17.04.18 : 기획조정실장 주재 현안회의
 - 시정 성과와 가치를 건축과 디자인으로 표현하는 방식 적용
- '17.04.26 : 도공단, 디자인재단, 서울역사박물관 업무 협의
 - 사업에 디자인재단 및 역사박물관(장소제공, 콘텐츠 등) 적극 참여
 - 사업 총감독(MP) 선정 검토 추진
- '17.04.27 : 총괄건축가, 기조실, 도공단, 문화본부, 디자인재단 업무협의
 - 도시공간개선단(총괄)과 디자인재단(사업추진)의 협업으로 사업추진
- '17.05 : 시장방침 수립

2017년도 추진방향 및 추진일정

사업추진절차	추진기간	예산집행계획	추진세부내용
계(천원)		1,700,000	
기획방향 수립	2017.05		대상정책 및 전시공간 확정, 전시공간 및 프로그램 기획방향 결정
재단 이사회 의결	2017.05.29		사업계획 예산안 디자인재단 이사회 의결
자치구 협의	2017.05-06		종로구청(장소사용, 관리 등 협조)
사업발주, 대외홍보	2017.05-06		입찰공고, 사업자 선정, 대외홍보
공간조성	2017.06-07		전시공간 조성
프로그램 개발	2017.07-08		전시 및 운영 프로그램 개발
행사 추진	2017.09-11		「서울, 건축과 디자인의 만남」 행사 추진

3 사업효과

최근 3년 추진실적

2014년도	해당없음
2015년도	해당없음
2016년도	해당없음

향후 기대효과

-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기간 중 서울시정의 가치와 철학을 도심의 공공공간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시민과 입체적·다면적으로 소통·공유
- 개별 사업의 전시 중심 정책 설명 및 홍보에서 탈피하여 통합적 관점의 담론과 스토리텔링 중심으로 정책을 재구성하고 다양한 체험전략을 운영하여 시민체감 증대
- 향후 전시공간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시민 소통·공유공간으로 활용

변경	재단 일반관리비(운영경비)
-----------	-----------------------

1	예산(안) 설명
----------	-----------------

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구분	2017 당초 예산(A)	2017 변경 예산(안) (B)	증감 (B-A)	(B-A)*100/A
운 영 경 비	2,267,180	2,310,210	43,030	1%

예산(안) 요구내역 및 산출근거

○ 운영경비

내역	금액		산출근거
	기존	변경	
합 계	259,400	302,430	증감금액 : 43,030천원
수선유지비	259,400	302,430	
전기통신등 수선비	24,000	36,000	1식 * 3,000,000원 * 12월
복사기등 기타비품 수선비	5,400	5,400	1식 * 450,000원 * 12월
사무용 PC유지보수		31,030	1식 * 31,030,000원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230,000	230,000	1식 * 230,000,000원

※ 운영비용 증가사유

- 재단 PC노후화 및 인원증가로 인해 PC대수증가로 인해 PC유지보수 사업 필요

변경	서울패션위크
-----------	---------------

1	예산(안) 설명
----------	-----------------

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2017 당초 예산(A)	2017 변경 예산(안) (B)	증감 (B-A)	(B-A)*100/A
5,355,200	5,852,625	497,425	9%

예산(안) 요구내역 및 산출근거

○ 예산 증감내역

과 목 구 분	2017년 본예산	2017년 변경예산(안)		증감사유	
추계 패션위크	1,678,700	신진디자이너 패션쇼 및 트레이드 쇼 지원	·미니패션쇼장 설치 -트러스/전기간선공사/백일 설치 등	97,000	행사 규모 변경
			·신진디자이너 트레이드쇼 부스 설치 -5,000천원x20개	100,000	
			·트레이드쇼장 운영인력지원 -150천원x5명x4일	3,000	
		패션문화 이벤트	·명예디자이너전시 콘텐츠 제작 지원	50,000	
			·명예디자이너전시 오픈 리셉션 운영 - 케이터링 50천원*200인분=10,000천원	10,000	
			·명예디자이너전시 보안인력지원(야간) -500천원*3명*20일	30,000	
			·명예 디자이너 전시 운영인력지원 -150천원*5명*20일	15,000	
			·서울패션위크 전용상품개발 - 상품개발 18,425천원 - 상품제작 15천원*5,000개=75,000천원	93,425	
		국내외 홍보마케팅	·영상촬영 및 홍보영상제작 - 컬렉션 장 내외부 및 부대프로그램 촬영	50,000	
			- 행사 전후 홍보영상 제작		
·해외 프레스 전담인력 추가 배치 - 140천원*7일간*50명	49,000				
합계			497,425		

2	사업설명
----------	-------------

사업목적

- 패션산업의 기반인 국내 브랜드의 해외진출 교두보 마련
- 세계 5대 패션도시 진입을 위한 글로벌 패션비즈니스 인프라 조성
- 세계패션 중심도시로서의 서울의 위상 제고

사업내용

- 일시/장소(안) : [춘계] 2017.3.20.~3.26 DDP, [추계] 2017.10.16.~10.21 DDP

○ 행사내용

- 서울컬렉션 : 국내외 프레스 대상 독립 패션 브랜드 쇼 개최(시즌별 40회 내외)
- 제너레이션넥스트 : 국내외 신진 디자이너 대상 트레이드 쇼 부스 및 합동 쇼 지원(시즌별 20-30회 내외)
- 어워드 : 원로, 중견, 신진 디자이너 중 각 1인을 선정하여 디자이너에게 수상
- 패션전시 : 원로 디자이너 수상자 패션 아카이빙 전시(년 1회)
- 오프닝, 피날레 행사 : 어워드 수상자 오프닝 전시 및 시상식 연계 피날레 행사 진행
 해외 바이어·프레스와의 글로벌 네트워킹 구축 파티
- 멘토링 세미나 : 해외 패션 전문가들로 구성 된 멘토링 세미나 진행
- 해외패션워크 교류(신규) : 각국의 패션워크 조직위원회에서 추천하는 디자이너 쇼 진행
- 아카이빙 (신규) : 국내 디자이너 디렉토리 및 히스토리 구축
 ※ 지속적인 아카이브 축적을 통해 패션 박물관의 전신 구축
- 기타 부대행사 : 시민 참여 및 소통을 위한 다양한 패션문화 이벤트

□ 2017년도 추계 추진방향 및 추진일정

사업추진절차	추진기간	예산집행계획	추진세부내용
계(천원)		497,425	
신진 디자이너 패션쇼 및 트레이드쇼 지원	2017.7~10	200,000	·트레이드쇼 부스 설치비 ·미니패션쇼 지원
패션 문화 이벤트(1) 명예 디자이너 전시	2017.7~11	105,000	·명예디자이너 전시 설치 및 홍보
패션 문화 이벤트(2) 전용상품개발	2017.7~10	93,425	·서울패션워크 PB상품 개발
국내외 홍보마케팅	2017.7~11	99,000	·국내외 주요매체 기획 기사 제작 ·국내외 주요매체 프로그램 제작 등

3

사업효과

□ 최근 3년 추진실적

2014년도	· 서울패션워크 수주실적 \$5,700천(연간) · 해외바이어 408명 참석(초청 134명), 국내바이어 231명 · 해외프레스 413명 참석(초청 43명), 국내프레스 1586명
2015년도	· 서울패션워크 수주실적 \$4,730천(연간) · 해외바이어 316명 참석(초청 139명), 국내바이어 178명 · 해외프레스 270명 참석(초청 38명), 국내프레스 1159명
2016년도	· 서울패션워크 수주실적 \$5,000천(연간) · 해외바이어 427명 참석(초청 299명), 국내바이어 208명 · 해외프레스 125명 참석(초청 37명), 국내프레스 1440명

의안번호	제139호
의결연월일	2017. 05. 29.

보수규정 일부 개정(안)

제안자	기획경영팀
제안년월일	2017. 05. 29.

1. 의결주문

○ 「보수규정」 일부를 아래와 같이 개정한다.

2. 제안이유

① 『보수규정』 제8조에 의거하여 기본연봉 한계액 조정

보수규정 제8조(기본연봉 한계액)

- ① 직급별 기본연봉액의 한계액은 <별표1>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 ② <별표1>의 직급별 기본연봉 한계액의 조정은 시장이 매년 결정하는 인건비 변동율의 이내에서 조정하되, 조정시기는 인건비 변동 추이에 따라 대표이사가 별도로 정한다.

② 일자리 시책 대응 및 가족친화경영 활성화를 위해 휴일근무 인정범위에 대한 기준 조정

-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 『서울형 노동시간 단축모델 추진계획(안)』 (2016.12)
- 서울시 공기업담당관 『2017 서울시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편람』 (2016.09)

3. 주요골자

① 『보수규정』 내 <별표1> 직급별 기본연봉 한계액표 및 <별표6> 신규임용 직급별 연봉산정표를 2017년 총인건비 기본인상률 기준에 따라 조정토록 함.

- 2017년 서울시 총인건비 인상률 : 기본인상률 3.5%(※ 호봉승급분 1.4% 별도)

현 행				개 정 안	
				(단위 : 천원)	
직 급	상 한 액	하 한 액	시장이 결정		
대표이사	시장이 결정			시장이 결정	
일반직	1급	72,678	54,470	75,222	56,376
	2급	66,893	42,260	69,234	43,739
	3급	60,385	36,586	62,498	37,867
	4급	53,790	29,374	55,673	30,402
	5급	46,278	23,008	47,898	23,813
	6급	42,350	19,936	43,832	20,634
전문직	가급	58,187	28,195	60,224	29,182
	나급	51,286	25,097	53,081	25,975
	다급	44,969	21,430	46,543	22,180
	라급	39,568	19,491	40,953	20,173
	마급	34,005	18,600	35,195	19,251

⇒ 3.5% 인상

② 『보수규정』 <별표2> 부가급여 지급 기준표 내 휴일근무수당 적용범위를 기존 최대 4일에서 예산 범위 내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토록 함.

		현 행	개 정 안
구분	지급률 또는 지급액	적용범위	적용범위
휴일근무수당	통상임금/209*1.5*8시간*휴일근무일수	복무규정에 의한 휴일에 근무한 4급 이하 직원을 대상으로 하되, 휴일근무는 최대 4일까지 인정한다. 단 대체휴일을 지정하여 휴무한 경우 또는 교대근무자의 경우에는 지급할 수 없다.	복무규정에 의한 휴일에 근무한 4급 이하 직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지급방법 등 세부 운영기준은 보수규정 시행내규를 준용한다.

4. 참고 사항

○ 제안근거

- 『2017년도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보완기준』 (행정자치부, 2017.02)
- 『2017년도 서울시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기준』 (서울특별시, 2016.08)
- 『서울형 노동시간 단축모델 추진계획(안)』 (노동정책담당관 현안업무보고, 2016.12)
- 『2017 서울시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편람』 (공기업담당관, 2016.09)

○ 절 차 : 이사회 의결 후 서울시장 승인

○ 기 타 : 개정안은 서울시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

「보수규정」 일부 개정(안)

「보수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1> 직급별 기본연봉 한계액표<개정 2017.05.00>

(단위 : 천원)

직 급		상 한 액	하 한 액
대표이사		시장이 결정	
일반직	1급	75,222	56,376
	2급	69,234	43,739
	3급	62,498	37,867
	4급	55,673	30,402
	5급	47,898	23,813
	6급	43,832	20,634
전문직	가급	60,224	29,182
	나급	53,081	25,975
	다급	46,543	22,180
	라급	40,953	20,173
	마급	35,195	19,251

○ <별표6> 신규임용 직급별 연봉산정표<개정 2017.05.00>

(단위 : 천원)

경력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전문직				
							가급	나급	다급	라급	마급
1	-	-	-	-	-	20,634	29,182	25,975	22,180	20,173	19,251
2	-	-	-	-	23,813	21,434	30,252	26,910	23,020	20,889	19,801
3	-	-	-	-	24,673	22,234	31,323	27,845	23,860	21,606	20,350
4	-	-	-	30,402	25,533	23,034	32,392	28,779	24,700	22,323	20,901
5	-	-	-	31,374	26,394	23,834	33,464	29,714	25,541	23,039	21,450
6	-	-	-	32,346	27,254	24,633	34,534	30,648	26,380	23,755	22,000
7	-	-	-	33,318	28,114	25,433	35,604	31,583	27,221	24,472	22,550
8	-	-	37,867	34,290	28,974	26,233	36,674	32,518	28,060	25,189	23,099
9	-	43,739	38,986	35,262	29,835	27,033	37,745	33,453	28,901	25,905	23,650
10	-	44,913	40,106	36,234	30,695	27,833	38,816	34,388	29,741	26,622	24,199
11	56,376	46,086	41,226	37,206	31,555	28,633	39,886	35,322	30,581	27,338	24,749
12	57,722	47,260	42,345	38,178	32,415	29,433	40,956	36,257	31,422	28,055	25,299
13	59,068	48,434	43,465	39,150	33,275	30,233	42,026	37,192	32,261	28,772	25,848
14	60,415	49,608	44,585	40,122	34,135	31,033	43,097	38,126	33,101	29,488	26,399
15	61,761	50,781	45,705	41,094	34,995	31,833	44,168	39,061	33,942	30,205	26,948
16	63,107	51,956	46,823	42,066	35,856	32,633	45,238	39,996	34,781	30,921	27,498
17	64,453	53,130	47,943	43,037	36,716	33,433	46,308	40,930	35,622	31,638	28,047
18	65,799	54,303	49,063	44,009	37,576	34,233	47,378	41,865	36,461	32,354	28,598
19	67,146	55,477	50,183	44,981	38,436	35,033	48,449	42,799	37,301	33,071	29,148
20	68,491	56,651	51,302	45,953	39,296	35,833	49,519	43,734	38,142	33,788	29,697
21	69,838	57,824	52,422	46,925	40,156	36,633	50,590	44,669	38,981	34,504	30,247
22	71,183	58,998	53,542	47,897	41,016	37,433	51,660	45,603	39,822	35,221	30,796
23	72,530	60,172	54,661	48,870	41,877	38,233	52,731	46,539	40,662	35,937	31,347
24	73,875	61,345	55,780	49,841	42,737	39,033	53,800	47,473	41,502	36,655	31,897
25	75,222	62,519	56,900	50,813	43,597	39,833	54,872	48,408	42,343	37,371	32,446
26		63,694	58,020	51,785	44,457	40,632	55,942	49,343	43,182	38,087	32,996
27		64,868	59,140	52,757	45,317	41,432	57,012	50,277	44,023	38,803	33,545
28		66,041	60,259	53,729	46,178	42,232	58,082	51,212	44,862	39,520	34,096
29		67,215	61,379	54,701	47,038	43,032	59,152	52,146	45,702	40,237	34,646
30		69,234	62,498	55,673	47,898	43,832	60,224	53,081	46,543	40,953	35,195

○ <별표2> 부가급여 지급 기준표<개정 2017.05.00>

(단위 : 원)

구 분	지급률 또는 지급액	적 용 범 위
시간 외 근무수당	◦ 통상임금/209×1.5×시간 <2012.1.20 개정>	◦ 정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3급 이하 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2016.08.30 개정> ◦ 시간외 근무는 3급은 월간 최대 10시간, 4급 이하는 월간 최대 20시간까지 인정한다. 단, 보직자는 시간외 근무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2016.08.30 개정>
휴일 근무수당	◦ 통상임금/209×1.5×8시간×휴일근무일수 <2012.1.20 개정>	◦ 복무규정에 의한 휴일에 근무한 4급 이하 직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지급방법 등 세부 운영기준은 보수규정 시행내 규를 준용한다.<2017.05.00 개정>
연월차 휴가수당	◦ 통상임금/209×8시간× 미사용일수 <<2012.1.20 개정>	◦ 복무규정에서 정한 소정의 연월차를 사용하지 않은 상근 임직원 전원을 대상으로 한다.
가족수당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준용	◦ 상근 임원 및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학비 보조수당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준용	◦ 상근 임원 및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야간근무 수당	◦ 통상임금/209×0.5×시간 <2012.1.20 개정>	◦ 탄력적 근무시간 적용을 받는 야간근무 직원을 대상으로 하며, 야간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주간근무자와 동일한 지급률의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한다.
직책 또는 직급수당 <2009.9.23개정> <2012.5.22개정> <2014.1.9개정>	◦ 직책수당(매월) · 대표이사 : 시장이 결정 · 단 장 : 800,000원 · 본부장 : 500,000원 <2016.08.30 개정> · 팀 장 : 500,000원 <2016.08.30 개정> ◦ 직급수당(매월) <2009.9.23. 개정> <일반직> · 1급: 700,000원 <2016.08.30 개정> · 2급: 600,000원 <2009.9.23. 신설> · 3급: 500,000원 · 4급: 400,000원 · 5급: 300,000원 <2016.08.30 개정> · 6급: 200,000원 <2016.08.30 개정> <전문직> · 가급 : 450,000원 <2016.08.30 신설> · 나급 : 350,000원 <2016.08.30 신설> · 다급 : 250,000원 <2016.08.30 신설> · 라급 : 150,000원 <2016.08.30 신설> · 마급 : 100,000원 <2016.08.30 신설>	◦ 팀장 직무대리사 직책수당 100,000원을 지급한다. <2014.1.9.개정> <2016.08.30 삭제> ◦ 상근 임원과 재단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2012.5.22 개정> <2016.08.30 개정>
특수업무 및 기술 수당 <2017.01.02.제 정>	◦ 지급분야 : 예산·결산·계약·감사·노사·보상업 무·경영평가 등 실무담당 직원(팀장이하) 월 80,000원 ※기술사 월 50,000원 이하, 기능장·기사 월 30,000원 이하, 산업기사 월 20,000원 이하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 회계, 결산, 계약, 감사, 노사, 보상업무, 경영평가 등 실무담당 직원(팀장 이하)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기능분야 자격증 소지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별표1> 직급별 기본연봉 한계액표			
(단위 : 천원)			
직 급		상 한 액	하 한 액
대표이사		시장이 결정	
일반직	1급	72,678	54,470
	2급	66,893	42,260
	3급	60,385	36,586
	4급	53,790	29,374
	5급	46,278	23,008
	6급	42,350	19,936
전문직	가급	58,187	28,195
	나급	51,286	25,097
	다급	44,969	21,430
	라급	39,568	19,491
	마급	34,005	18,600

개 정 안			
<별표1> 직급별 기본연봉 한계액표 <개정 2017.05.00>			
(단위 : 천원)			
직 급		상 한 액	하 한 액
대표이사		시장이 결정	
일반직	1급	75,222	56,376
	2급	69,234	43,739
	3급	62,498	37,867
	4급	55,673	30,402
	5급	47,898	23,813
	6급	43,832	20,634
전문직	가급	60,224	29,182
	나급	53,081	25,975
	다급	46,543	22,180
	라급	40,953	20,173
	마급	35,195	19,251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별표6> 신규임용 직급별 연봉산정표

(단위 : 천원)

경력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전문직				
							가급	나급	다급	라급	마급
1	-	-	-	-	-	19,936	28,195	25,097	21,430	19,491	18,600
2	-	-	-	-	23,008	20,709	29,229	26,000	22,242	20,183	19,131
3	-	-	-	-	23,839	21,482	30,264	26,903	23,053	20,875	19,662
4	-	-	-	29,374	24,670	22,255	31,297	27,806	23,865	21,568	20,194
5	-	-	-	30,313	25,501	23,028	32,332	28,709	24,677	22,260	20,725
6	-	-	-	31,252	26,332	23,800	33,366	29,612	25,488	22,952	21,256
7	-	-	-	32,191	27,163	24,573	34,400	30,515	26,300	23,644	21,787
8	-	-	36,586	33,130	27,994	25,346	35,434	31,418	27,111	24,337	22,318
9	-	42,260	37,668	34,070	28,826	26,119	36,469	32,322	27,924	25,029	22,850
10	-	43,394	38,750	35,009	29,657	26,892	37,503	33,225	28,735	25,722	23,381
11	54,470	44,528	39,832	35,948	30,488	27,665	38,537	34,128	29,547	26,414	23,912
12	55,770	45,662	40,913	36,887	31,319	28,438	39,571	35,031	30,359	27,106	24,443
13	57,071	46,796	41,995	37,826	32,150	29,211	40,605	35,934	31,170	27,799	24,974
14	58,372	47,930	43,077	38,765	32,981	29,984	41,640	36,837	31,982	28,491	25,506
15	59,672	49,064	44,159	39,704	33,812	30,757	42,674	37,740	32,794	29,184	26,037
16	60,973	50,199	45,240	40,643	34,643	31,529	43,708	38,643	33,605	29,875	26,568
17	62,273	51,333	46,322	41,582	35,474	32,302	44,742	39,546	34,417	30,568	27,099
18	63,574	52,467	47,404	42,521	36,305	33,075	45,776	40,449	35,228	31,260	27,631
19	64,875	53,601	48,486	43,460	37,136	33,848	46,811	41,352	36,040	31,953	28,162
20	66,175	54,735	49,567	44,399	37,967	34,621	47,844	42,255	36,852	32,645	28,693
21	67,476	55,869	50,649	45,338	38,798	35,394	48,879	43,158	37,663	33,337	29,224
22	68,776	57,003	51,731	46,277	39,629	36,167	49,913	44,061	38,475	34,030	29,755
23	70,077	58,137	52,813	47,217	40,461	36,940	50,948	44,965	39,287	34,722	30,287
24	71,377	59,271	53,894	48,156	41,292	37,713	51,981	45,868	40,099	35,415	30,818
25	72,678	60,405	54,976	49,095	42,123	38,486	53,016	46,771	40,911	36,107	31,349
26		61,540	56,058	50,034	42,954	39,258	54,050	47,674	41,722	36,799	31,880
27		62,674	57,140	50,973	43,785	40,031	55,084	48,577	42,534	37,491	32,411
28		63,808	58,221	51,912	44,616	40,804	56,118	49,480	43,345	38,184	32,943
29		64,942	59,303	52,851	45,447	41,577	57,152	50,383	44,157	38,876	33,474
30		66,893	60,385	53,790	46,278	42,350	58,187	51,286	44,969	39,568	34,005

개 정 안

<별표6> 신규임용 직급별 연봉산정표<개정 2017.05.00>

(단위 : 천원)

경력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전문직				
							가급	나급	다급	라급	마급
1	-	-	-	-	-	20,634	29,182	25,975	22,180	20,173	19,251
2	-	-	-	-	23,813	21,434	30,252	26,910	23,020	20,889	19,801
3	-	-	-	-	24,673	22,234	31,323	27,845	23,860	21,606	20,350
4	-	-	-	30,402	25,533	23,034	32,392	28,779	24,700	22,323	20,901
5	-	-	-	31,374	26,394	23,834	33,464	29,714	25,541	23,039	21,450
6	-	-	-	32,346	27,254	24,633	34,534	30,648	26,380	23,755	22,000
7	-	-	-	33,318	28,114	25,433	35,604	31,583	27,221	24,472	22,550
8	-	-	37,867	34,290	28,974	26,233	36,674	32,518	28,060	25,189	23,099
9	-	43,739	38,986	35,262	29,835	27,033	37,745	33,453	28,901	25,905	23,650
10	-	44,913	40,106	36,234	30,695	27,833	38,816	34,388	29,741	26,622	24,199
11	56,376	46,086	41,226	37,206	31,555	28,633	39,886	35,322	30,581	27,338	24,749
12	57,722	47,260	42,345	38,178	32,415	29,433	40,956	36,257	31,422	28,055	25,299
13	59,068	48,434	43,465	39,150	33,275	30,233	42,026	37,192	32,261	28,772	25,848
14	60,415	49,608	44,585	40,122	34,135	31,033	43,097	38,126	33,101	29,488	26,399
15	61,761	50,781	45,705	41,094	34,995	31,833	44,168	39,061	33,942	30,205	26,948
16	63,107	51,956	46,823	42,066	35,856	32,633	45,238	39,996	34,781	30,921	27,498
17	64,453	53,130	47,943	43,037	36,716	33,433	46,308	40,930	35,622	31,638	28,047
18	65,799	54,303	49,063	44,009	37,576	34,233	47,378	41,865	36,461	32,354	28,598
19	67,146	55,477	50,183	44,981	38,436	35,033	48,449	42,799	37,301	33,071	29,148
20	68,491	56,651	51,302	45,953	39,296	35,833	49,519	43,734	38,142	33,788	29,697
21	69,838	57,824	52,422	46,925	40,156	36,633	50,590	44,669	38,981	34,504	30,247
22	71,183	58,998	53,542	47,897	41,016	37,433	51,660	45,603	39,822	35,221	30,796
23	72,530	60,172	54,661	48,870	41,877	38,233	52,731	46,539	40,662	35,937	31,347
24	73,875	61,345	55,780	49,841	42,737	39,033	53,800	47,473	41,502	36,655	31,897
25	75,222	62,519	56,900	50,813	43,597	39,833	54,872	48,408	42,343	37,371	32,446
26		63,694	58,020	51,785	44,457	40,632	55,942	49,343	43,182	38,087	32,996
27		64,868	59,140	52,757	45,317	41,432	57,012	50,277	44,023	38,803	33,545
28		66,041	60,259	53,729	46,178	42,232	58,082	51,212	44,862	39,520	34,096
29		67,215	61,379	54,701	47,038	43,032	59,152	52,146	45,702	40,237	34,646
30		69,234	62,498	55,673	47,898	43,832	60,224	53,081	46,543	40,953	35,195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별표2> 부가급여 지급 기준표

(단위 : 원)

구 분	지급률 또는 지급액	적 용 범 위
시간 외 근무수당	◦ 통상임금/209×1.5×시간 (2012.1.20 개정)	◦ 정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3급 이하 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2016.08.30 개정> ◦ 시간외 근무는 3급은 월간 최대 10시간, 4급 이하는 월간 최대 20시간까지 인정한다. 단, 보직자는 시간외 근무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2016.08.30 개정>
휴일 근무수당	◦ 통상임금/209×1.5×8시간×휴일근무일수 (2012.1.20 개정)	◦ 복무규정에 의한 휴일에 근무한 4급 이하 직원을 대상으로 하되, 휴일 근무는 최대 4일까지 인정한다. 단, 대체휴일을 지정하여 휴무한 경우 또는 교대 근무자의 경우에는 지급할 수 없다.
연월차 휴가수당	◦ 통상임금/209×8시간×미사용일수 <<2012.1.20 개정>	◦ 복무규정에서 정한 소정의 연월차를 사용하지 않은 상근 임직원 전원을 대상으로 한다.
가족수당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준용	◦ 상근 임원 및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학비 보조수당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준용	◦ 상근 임원 및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야간근무 수당	◦ 통상임금/209×0.5×시간 (2012.1.20 개정)	◦ 탄력적 근무시간 적용을 받는 야간근무 직원을 대상으로 하며, 야간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주간근무자와 동일한 지급률의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한다.
직책 또는 지급수당 <2009.9.23개정> <2012.5.22개정> <2014.1.9개정>	◦ 직책수당(매월) · 대표이사 : 시장이 결정 · 단 장 : 800,000원 · 본부장 : 500,000원 <2016.08.30 개정> · 팀 장 : 500,000원 <2016.08.30 개정> ◦ 지급수당(매월) <2009.9.23. 개정> <일반직> · 1급: 700,000원 <2016.08.30 개정> · 2급: 600,000원 <2009.9.23. 신설> · 3급: 500,000원 · 4급: 400,000원 · 5급: 300,000원 <2016.08.30 개정> · 6급: 200,000원 <2016.08.30 개정> <전문직> · 가급 : 450,000원 <2016.08.30 신설> · 나급 : 350,000원 <2016.08.30 신설> · 다급 : 250,000원 <2016.08.30 신설> · 라급 : 150,000원 <2016.08.30 신설> · 마급 : 100,000원 <2016.08.30 신설>	◦ 팀장 직무대리자 직책수당 100,000원을 지급한다. <2014.1.9.개정> <2016.08.30 삭제> ◦ 상근 임원과 재단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2012.5.22 개정> <2016.08.30 개정>
특수업무 및 기술 수당 <2017.01.02.제정>	◦ 지급분야 : 예산·결산·계약·감사·노사·보상업무·경영평가 등 실무담당 무·경영평가 등 실무담당 직원(팀장이하) 월 80,000원 ※기술사 월 50,000원 이하, 기능장·기사 월 30,000원 이하, 산업기사 월 20,000원 이하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 회계, 결산, 계약, 감사, 노사, 보상업무, 경영평가 등 실무담당 직원(팀장 이하)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 기능분야 자격증 소지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개 정 안

<별표2> 부가급여 지급 기준표 <개정 2017.05.00>

(단위 : 원)

구 분	지급률 또는 지급액	적 용 범 위
시간 외 근무수당	◦ 통상임금/209×1.5×시간 <2012.1.20 개정>	◦ 정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3급 이하 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2016.08.30 개정> ◦ 시간외 근무는 3급은 월간 최대 10시간, 4급 이하는 월간 최대 20시간까지 인정한다. 단, 보직자는 시간외 근무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2016.08.30 개정>
휴일 근무수당	◦ 통상임금/209×1.5×8시간×휴일근무일수 <2012.1.20 개정>	◦ 복무규정에 의한 휴일에 근무한 4급 이하 직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지급방법 등 세부 운영기준은 보수규정 시행내 규를 준용한다.<2017.05.00 개정>
연월차 휴가수당	◦ 통상임금/209×8시간×미사용일수 <<2012.1.20 개정>	◦ 복무규정에서 정한 소정의 연월차를 사용하지 않은 상근 임직원 전원을 대상으로 한다.
가족수당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준용	◦ 상근 임원 및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학비 보조수당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준용	◦ 상근 임원 및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야간근무 수당	◦ 통상임금/209×0.5×시간 <2012.1.20 개정>	◦ 탄력적 근무시간 적용을 받는 야간근무 직원을 대상으로 하며, 야간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주간근무자와 동일한 지급률의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한다.
직책 또는 직급수당 <2009.9.23개정> <2012.5.22개정> <2014.1.9개정>	◦ 직책수당(매월) · 대표이사 : 시장이 결정 · 단 장 : 800,000원 · 본부장 : 500,000원 <2016.08.30 개정> · 팀 장 : 500,000원 <2016.08.30 개정> ◦ 직급수당(매월) <2009.9.23. 개정> <일반직> · 1급: 700,000원 <2016.08.30 개정> · 2급: 600,000원 <2009.9.23. 신설> · 3급: 500,000원 · 4급: 400,000원 · 5급: 300,000원 <2016.08.30 개정> · 6급: 200,000원 <2016.08.30 개정> <전문직> · 가급 : 450,000원 <2016.08.30 신설> · 나급 : 350,000원 <2016.08.30 신설> · 다급 : 250,000원 <2016.08.30 신설> · 라급 : 150,000원 <2016.08.30 신설> · 마급 : 100,000원 <2016.08.30 신설>	◦ 팀장 직무대리사 직책수당 100,000원을 지급한다. <2014.1.9.개정> <2016.08.30 삭제> ◦ 상근 임원과 재단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2012.5.22 개정> <2016.08.30 개정>
특수업무 및 기술 수당 <2017.01.02.제정>	◦ 지급분야 : 예산·결산·계약·감사·노사·보상업무·경영평가 등 실무담당 무·경영평가 등 실무담당 직원(팀장이하) 월 80,000원 ※기술사 월 50,000원 이하, 기능장·기사 월 30,000원 이하, 산업기사 월 20,000원 이하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 회계, 결산, 계약, 감사, 노사, 보상업무, 경영평가 등 실무담당 직원(팀장 이하)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기능분야 자격증 소지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의안번호	제140호
의결연월일	2017. 05. 29.

인사규정 일부 개정(안)

제안자	기획경영팀
제안년월일	2017. 05. 29.

1. 의결주문

- 「인사규정」 일부를 아래와 같이 개정한다.

2. 제안이유

- 『퇴직공직자 취업실태 특정감사결과 통보』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4567)에 따라 인사규정 내 특별채용에 관한 사항 삭제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에 의거하여 인사규정 내 직원 정년 조정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장 제19조

-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 ② 사업주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

3. 주요골자

- 『인사규정』 제5조(임용방법) 1항 내용 중 특별채용에 관한 사항 삭제
- 『인사규정』 제29조(정년) 1항 내용 중 3급 이하 직원의 정년을 기존 57세에서 60세로 조정

인사규정 제29조(정년)	⇒	인사규정 제29조(정년)
① 직원의 정년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1급부터 2급까지는 만60세 2. 3급 이하는 만 57세		① 직원의 정년은 만60세로 한다.

4. 참고 사항

- 제안근거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고용노동부, 2016.07.28.)
 - 『퇴직공직자 취업실태 특정감사결과 통보』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4567, 2017.03.21)
- 절 차 : 이사회 승인
- 기 타 : 개정안은 이사회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

「인사규정」 일부 개정(안)

「인사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인사규정』 제5조(임용방법)

- ① 재단 직원의 신규채용은 공개경쟁시험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인사위원회의 사전 의결을 거쳐 특별채용을 할 수 있다.<개정 2017.05.00>~~
- ~~1. 특수한 자격과 기술을 보유한 자로 공개채용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삭제 2017.05.00>~~
 - ~~2. 법령에 의하여 채용의무가 있는 자를 채용하는 경우<삭제 2017.05.00>~~
 - ~~3.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직원을 채용하는 경우<삭제 2017.05.00>~~
 - ~~4. 재단에 파견된 공무원이 전문성이 확보되어 재단으로 이직할 경우<삭제 2017.05.00>~~

○ 『인사규정』 제29조(정년)

- ① 직원의 정년은 만60세로 한다.<개정 2017.05.00>
- ~~1. 1급부터 2급까지는 만60세<삭제 2017.05.00>~~
 - ~~2. 3급 이하는 만57세<삭제 2017.05.00>~~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임용방법)</p> <p>① 재단 직원의 신규채용은 공개경쟁시험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인사위원회의 사전 의결을 거쳐 특별채용을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특수한 자격과 기술을 보유한 자로 공개채용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2. 법령에 의하여 채용의무가 있는 자를 채용하는 경우 3.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4. 재단에 파견된 공무원이 전문성이 확보되어 재단으로 이직할 경우 <p>② 채용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p>	<p>제5조(임용방법)</p> <p>① 재단 직원의 신규채용은 공개경쟁시험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인사위원회의 사전 의결을 거쳐 특별채용을 할 수 있다.<개정 2017.05.0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특수한 자격과 기술을 보유한 자로 공개채용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삭제 2017.05.00> 2. 법령에 의하여 채용의무가 있는 자를 채용하는 경우<삭제 2017.05.00> 3.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직원을 채용하는 경우<삭제 2017.05.00> 4. 재단에 파견된 공무원이 전문성이 확보되어 재단으로 이직할 경우<삭제 2017.05.00> <p>② 채용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p>
<p>제29조(정년)</p> <p>① 직원의 정년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1급부터 2급까지는 만60세 2. 3급 이하는 만57세 <p>② 제1항의 정년 기준일은 생년월일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 6월 30일로,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 12월 31일로 한다.</p>	<p>제29조(정년)</p> <p>① 직원의 정년은 만60세로 한다.<개정 2017.05.0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1급부터 2급까지는 만60세<삭제 2017.05.00> 2. 3급 이하는 만57세<삭제 2017.05.00> <p>② 제1항의 정년 기준일은 생년월일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 6월 30일로,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 12월 31일로 한다.</p>

의안번호	제141호
의결연월일	2017. 05. 29.

임직원 퇴직금규정 일부 개정

제안자	경영지원팀
제안년월일	2017. 05. 29.

1. 의결주문

- 「임직원 퇴직금규정」 일부를 아래와 같이 개정한다.

2. 제안이유

- 임금피크제 도입
 - 임금피크제 대상자의 연봉 조정에 따른 퇴직금 하향조정
- 상위법보다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조항 개정
 - 상위법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에서 명시하고 있는 중간정산 사유에 따른 횡수제한보다 광범위하게 제한을 두어 근로자 불이익 발생

3. 주요골자

- 퇴직금 중간정산의 횡수 제한 조항 삭제
 -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재직 중 1회로 제한하는 조항 삭제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 목적으로 전세금 등을 부담하는 경우만 1회로 한정
 -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를 제한한 신설 조항에 명시
- 퇴직금 중간정산의 사유를 명시하는 조항 신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시행령 제3조 제1항의 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명시

4. 참고 사항

- 제안근거
 - 『지방출자·출연기관 임금피크제 운영지침』 (행정자치부 공기업과, 2016.05)
 - 『임금피크제 도입 및 운영계획(안)』 (대표이사방침 제3846호, 2016.12.15.)
 - 『임금피크제 적용에 따른 대상자 연봉 조정 계획』 (대표이사방침 제178호, 2017.01.19.)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751호, 2016.12.30.)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질의회시집,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529, 2013.02.07.)
- 절 차 : 이사회 승인
- 기 타 : 개정안은 이사회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

임직원퇴직금규정 일부 개정안

「임직원퇴직금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 제2항을 삭제한다.

○ 제7조 제3항을 신설한다.

③ 제①항의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한다.<2017.05.00 신설 >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재직기간 중 1회로 한정)

3.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요양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로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로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7.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05월 00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7조(퇴직금의 중간정산)</p> <p>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2항에 의거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가산한다.</p> <p>② 퇴직금 중간정산은 재직 중 1회에 한한다.</p>	<p>제7조(퇴직금의 중간정산)</p> <p>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2항에 의거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가산한다.</p> <p>② <2017.5.00 삭제></p> <p>③ 제①항의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한다. <2017.05.00 신설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재직기간 중 1회로 한정) 3.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요양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로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회생및

	<p>파산에관한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p> <p>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로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회생및 파산에관한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p> <p>6.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p> <p>7.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p>
--	--

의안번호	제142호
의결연월일	2017. 05. 29.

이사회운영규정 일부 개정

제안자	경영지원팀
제안년월일	2017. 05. 29

1. 의결주문

- 「이사회운영규정」 일부를 아래와 같이 개정한다.

2. 제안이유

- 이사회 긴급 소집 가능 여부에 대한 근거 마련
 - 불가피하게 시급히 의결해야 하는 안건의 경우, 이사회 개최 기준을 준수할 수 없음.
긴급 이사회를 규정에 의해 개최할 수 있도록 조항 내용 수정

- 이사회 개최 운영 기준 : 일반안건 이사회 개최 7일 전까지 소집통지 송부
예산 및 주요 사업계획안건 이사회 개최 15일전까지 송부
* 단, 상기 기준을 준수할 수 없는 긴급을 요하는 객관적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본
기준 적용 배제(이사회 소집 통지시 이사회장이 서명 날인한 '긴급통지 사유서' 별도 첨부)

[서울시 출자 출연기관 운영관련 제도 개선계획(공기업담당관-4799) 1.1 이사회 개최 기준 준수 내용반영]

- 업무분장 조정으로 인한 업무 담당 변경

- 기존 의안설명 담당인 '창의경영실장' 내용을 삭제함

3. 주요골자

- 제5조(이사회 소집) 4항 개정
 - ④ 긴급을 요하는 객관적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사회장이 서명·날인한 긴급통지 사유서를 별도 첨부하여 통지할 수 있다.
- 제10조(의안설명) 개정
 - 이사회 의제출안건은 이사회 소관부서 부서장이 설명한다.

4. 참고 사항

- 제안근거
 - 서울시 출자 출연기관 운영관련 제도 개선계획 알림 (서울시 공기업 담당관-4799, 2016.4)
 - 업무분장 내규 개정(대표이사방침 제1082호, 2017.3.22)
- 절 차 : 이사회 승인
- 기 타 : 개정안은 이사회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이사회회의 소집)</p> <p>① 이사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소집한다.</p> <p>② 정기회의는 연2회 소집한다.</p> <p>③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 소집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이사장 또는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할 때 3. 정관 제10조제4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p>④ 이사회회의 소집은 회의 개최 7일전까지 그 안건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p>	<p>제5조(이사회회의 소집)</p> <p>① 이사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소집한다.</p> <p>② 정기회의는 연2회 소집한다.</p> <p>③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 소집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이사장 또는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할 때 3. 정관 제10조제4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p>④ 이사회회의 소집은 회의 개최 7일전까지 그 안건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객관적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사장이 서명·날인한 긴급통지 사유서를 별도 첨부하여 통지할 수 있다.</p>
<p>제10조(의안설명)</p> <p>이사회회의 제출안건은 창의경영실장 또는 소관부서장이 설명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관계직원을 출석시켜 의안에 관한 대리 설명이나, 의견 등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p>	<p>제10조(의안설명)</p> <p>이사회회의 제출안건은 창의경영실장 또는 <삭제> 소관부서장이 설명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관계직원을 출석시켜 의안에 관한 대리 설명이나, 의견 등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p>

의안번호	제143호
의결연월일	2017. 05. 29.

회계규정 일부 개정

제안자	경영지원팀
제안년월일	2017. 05. 29

1. 의결주문

- 「회계규정」 일부를 아래와 같이 개정한다.

2. 제안이유

- 회계관계자 직명 중 “회계책임자-창의경영실장”을 회계부서의 본부장으로 변경
- 일계표 및 월계표의 작성을 전산회계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 전산자료로 대체하여 보고
- 선급금의 지급기준 중 계약금액 기준을 삭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계약관련 규정 변경

3. 주요골자

- 회계책임자는 회계부서의 본부장으로 한다. (제6조 1호)
- 매월 초 전월 월계표를 분임회계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단, 전산회계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 전산자료로 보고할 수 있다. (제13조)
- 선급금의 지급기준 중 공사, 제조 또는 용역 계약금액의 대가로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22조 5호)
- 계약서의 작성의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계약금액이 5,000만원
이하인 계약, 경매에 부치는 경우 등이며(제61조), 대가의 지급은
검사를 완료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며(제86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시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제95조)

4. 참고 사항

- 제안근거
 -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2017.01.28.)에 따른 재단 회계규정 「8장 계약」 개정
- 절 차 : 이사회 승인
- 기 타 : 개정안은 이사회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정안
<p>제6조(회계관계자 직명 지정) 대표이사는 회계업무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자 직명을 지정 운용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회계책임자 - 창의경영실장 2. 분임회계책임자 - 회계부서의 장 3. 분임회계원 - 회계담당자 4. 전도금출납원 - 회계담당자 5. 출납담당자 - 금전의 출납을 담당하는 직원 	<p>제6조(회계관계자 직명 지정) 대표이사는 회계업무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자 직명을 지정 운용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회계책임자 - 회계부서의 본부장 2. 분임회계책임자 - 회계부서의 장 3. 분임회계원 - 회계담당자 4. 전도금출납원 - 회계담당자 5. 출납담당자 - 금전의 출납을 담당하는 직원
<p>제13조(일계표) 일계표는 계정과목 집계표에 의하여 작성하며, 매월 초 전월 월계표를 분임회계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제13조(일계표) 일계표는 계정과목 집계표에 의하여 작성하며, 매월 초 전월 월계표를 분임회계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단, 전산회계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 전산자료로 보고 할 수 있다.</p>
<p>제22조(선급금) 반대급부 또는 행위가 완료되기 이전에 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업무나 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성질의 비용에 대하여는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급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4. (생략) 5.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공사 또는 제조와 계약금액이 5백만원 이상인 용역에 있어서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 6. ~ 9. (생략) 	<p>제22조(선급금) 반대급부 또는 행위가 완료되기 이전에 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업무나 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성질의 비용에 대하여는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급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4. (생략) 5. 공사, 제조 또는 용역 계약의 대가로서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 6. ~ 9. (생략)
<p>제61조(계약서의 작성생략)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계약서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청구서, 각서, 협정서, 승낙사항 등 계약 성립의</p>	<p>제61조(계약서의 작성생략)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계약서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청구서, 각서, 협정서, 승낙사항 등 계약 성립의</p>

현 행	개정안
<p>근거가 될 수 있는 서류를 받아 비치하여야 한다.</p> <p>1. 계약금액이 3,000만원 이하인 계약을 체결할 때</p> <p>2. 물품매각의 경우에 있어서는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납부하고 그 물품을 인수할 때</p> <p>3. 관영 관허요금 또는 요율에 의하여 계약을 할 때</p> <p>4. 정부투자기관 및 서울특별시의 투자기관 또는 자본금의 5할 이상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투자한 법인과 계약을 할 때</p> <p>제62조(계약보증금)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는 제외) 현금, 국공채 또는 이행보증보험증서, 건설공제조합 등이 발행하는 보증서로서 계약금의 10/100이상의 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금액이 3,000만원 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보증금을 면제할 수 있으며, 재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증하기 위한 계약보증지급각서를 제출케 할 수 있다.</p> <p>제65조(예정가격의 비치)</p>	<p>근거가 될 수 있는 서류를 받아 비치하여야 한다.</p> <p>1. 계약금액이 5,000만원 이하인 계약을 체결할 때</p> <p>2. 경매에 부치는 경우 (제2호 신설에 따라 제2호를 제3호로, 제3호를 제4호로, 제4호를 제5호로 변경한다.)></p> <p>3. 물품매각의 경우에 있어서는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납부하고 그 물품을 인수할 때</p> <p>4. 관영 관허요금 또는 요율에 의하여 계약을 할 때 (전기·가스·수도의 공급계약 등 그 계약의 성질상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는 경우)</p> <p>5. 정부투자기관 및 서울특별시의 투자기관 또는 자본금의 5할 이상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투자한 법인과 계약을 할 때 (국가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p> <p>제62조(계약보증금)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는 제외) 현금, 국공채 또는 이행보증보험증서, 건설공제조합 등이 발행하는 보증서로서 계약금의 10/100이상의 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금액이 5,000만원 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보증금을 면제할 수 있으며, 재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증하기 위한 계약보증지급각서를 제출케 할 수 있다.</p> <p>제65조(예정가격의 비치)</p>

현 행	개정안
<p>① (생략)</p> <p>② 대표이사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수의 계약 및 개산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일괄입찰 및 실시설계시공입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한다.</p> <p>제72조(지명경쟁입찰대상자의 지명) 대표이사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지명경쟁입찰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5인 이상의 입찰자를 지명하여 3인 이상의 입찰참가 신청이 있어야 한다. 다만, 지명대상자가 5인 미만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73조(수의계약 집행기준) 대표이사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p> <p>1. ~4. (생략)</p> <p>5.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일반공사의 경우 추정가격이 2억원(「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의 경우에는 1억원,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 또는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 그 밖에 공사 관련 법령에 의한 공사의 경우에는 8천만원) 이하인 공사, 추정가격(임차 또는 임대)의 경우에는 연액 또는 총액기준)이 5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용역계약(용역계약 중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은 3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또는 그 밖의 계약의 경우</p>	<p>① (생략)</p> <p>② 대표이사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수의 계약, 협상에의한계약 및 개산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일괄입찰 및 실시설계시공입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한다.</p> <p>제72조(지명경쟁입찰대상자의 지명) 대표이사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지명경쟁입찰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5인 이상의 입찰자를 지명하여 2인 이상의 입찰참가 신청이 있어야 한다. 다만, 지명대상자가 5인 미만인 때에는 대상자를 모두 지명하여야 한다.</p> <p>제73조(수의계약 집행기준) 대표이사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p> <p>1. ~4. (생략)</p> <p>5.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는 제외한다)로서 추정가격이 2억원 이하인 공사, 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공사 및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8천만원 이하인 공사에 대한 계약, 추정가격(임차 또는 임대)의 경우에는 연액 또는 총액기준 5천만원 이하)이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용역계약 (그 밖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 시행령, 행정자치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준용)</p>

현 행	개정안
<p>6. 1억원을 초과하는 공사, 3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의 제조, 구매, 용역 등 기타 계약의 경우라도 경쟁입찰에 부쳐서는 실기하거나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오히려 불리한 가격이나 조건, 납품수준의 저하를 초래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로서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단,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p>	<p>6. <삭제></p>
<p>7. ~8. (생략)</p>	<p>7. ~8. (생략)</p>
<p>9. 산업표준화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표시가 허가된 광공업규격표시물품 또는 품질경영촉진법에 의하여 인증을 받았거나 등급사정을 받은 물품으로서 동일품의 생산자가 1인뿐인 경우에는 그 생산자로 하여금 제조하게 하거나 이로부터 구매할 경우</p>	<p>9. <삭제></p>
<p>10. 생략</p>	<p>10. 생략</p>
<p>11.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한 농공지구 입주공장(새마을공장을 포함한다)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제조, 구매할 경우</p>	<p>11.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공지구 입주공장(새마을공장을 포함한다)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제조, 구매할 경우</p>
<p>12.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제조, 구매할 경우</p>	<p>12.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제조, 구매 또는 직접 수행하는 용역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품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p>
<p>13.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사업을 위탁, 대행할 수 있는 자와 당해사업에 대한 계약을 할 경우</p>	<p>13.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위탁받거나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p>
<p>14. 생략</p>	<p>14. 생략</p>
<p>15. 제1호 내지 제14호 이외의 계약목적</p>	<p>1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p>

현 행	개정안
<p>또는 성질상 수익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p> <p>제75조(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의 수익계약) 대표이사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체결 후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의 이행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이행에 착수한 후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에 그 낙찰금액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범위 안에서 다른자와 수익계약을 할 수 있다. 다만,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 정한 가격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p> <p>제85조(대가의 지급) ① 대표이사 또는 그 위임을 맡은 자는 공사, 제조, 구매, 용역 기타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에 있어서는 검사를 완료한 후 계약대상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의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 본문의 경우 계약대상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14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p> <p>제87조(하자보수보증금) ① (생략)</p> <p>② 하자담보의 책임기간 및 보증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p>	<p>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의거하여, 제1호 내지 제14호 이 외의 계약목적 또는 성질상 수익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p> <p>제75조(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의 수익계약) 대표이사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체결 후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의 이행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이행에 착수한 후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에 그 낙찰금액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범위 안에서 다른자와 수익계약을 할 수 있다. 다만,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 정한 가격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p> <p>제85조(대가의 지급) ① 대표이사 또는 그 위임을 맡은 자는 공사, 제조, 구매, 용역 기타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에 있어서는 검사를 완료한 후 계약대상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계약의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 본문의 경우 계약당사자와 합의하여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가의 지급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p> <p>제87조(하자보수보증금) ① (생략)</p> <p>② 하자담보의 책임기간 및 보증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p>

현 행	개정안
<p>제93조(지체상금) 대표이사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국가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 때 지체 상금은 공사는 1000분의 1, 물품의 제조, 구매는 1000분의 1.5, 물품의 수라가공대여용역 및 기타는 1000분의 2.5, 운송보관은 1000분의 5를 지체일수에 곱한 금액을 계약 상대방으로 하여금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 한다.</p>	<p>제93조(지연배상금) ① 대표이사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국가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 때 지체 상금은 공사는 1000분의 1, 물품의 제조, 구매는 1000분의 1.5, 물품의 수라가공대여용역 및 기타는 1000분의 2.5, 운송보관은 1000분의 5를 지체일수에 곱한 금액을 계약 상대방으로 하여금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 한다.</p> <p>② 제1항의 경우 기성 부분 또는 기납 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응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뺀 금액을 기준으로 지연배상금을 계산하여야 한다.</p>
<p>제95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표이사는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할 우려가 있거나 기타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사실이 있는 후 지체 없이 1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당해 계약상대자 또는 입찰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p>	<p>제95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대표이사는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우려가 있는 자나,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자, 그 밖에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약심의 위원회에서 그 입찰참가자격 제한 여부에 관하여 심의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p>

현 행	개정안
	<p>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 외에는 적합한 시공사, 제조자가 없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보고안건 보고

1	사무위임전결내규 개정의 건
2	기부금관리 및 운영규정 시행 내규 개정의 건
3	신임이사 임명보고

1. 사무위임전결내규 개정

○ 개정사항 : 단위사업계획 및 결과보고에 대한 기획경영팀장(또는 사업관리 담당 팀장) 협조 의무화

○ 개정사유

no.	항목	개정사유
1	주요사업(단위사업) 계획 수립 및 변경	경영방침에 의거한 사업범위 정립, 사업 효율성 제고, 전사 비전 및 경영전략과의 연계 강화
2	사업결과보고 및 정산	결과물 기록, 경영평가 반영, 사업 환류, 사업 평가에 활용

○ 개정내용

변경 전								
가능 별	단위업무	세부사항	전결 권자					비고
			담당	팀장/센터장	본부장/소장	단장	대표이사	
사업	1. 기획	1. 주요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					○	
	2. 개별사업의 추진	1. 사업총괄계획수립					○	
		2. 세부사업계획수립				○		
		3. 계약 및 용역업체선정					○	
		4. 선금금 지급			○			
		5. 기성금 지급			○			
6. 사업결과보고 및 정산						○		



변경 후								
가능 별	단위업무	세부사항	전결 권자					비고
			담당	팀장/센터장	본부장/소장	단장	대표이사	
사업	1. 기획	1. 주요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					○	기획경영팀장 협조
	2. 개별사업의 추진	1. 사업총괄계획수립					○	
		2. 세부사업계획수립				○		
		3. 계약 및 용역업체선정					○	
		4. 선금금 지급			○			
		5. 기성금 지급			○			
6. 사업결과보고 및 정산						○	기획경영팀장 협조	

2. 기부금관리 및 운영규정 시행내규 개정

○개정근거 : 업무분장 내규 개정(대표이사방침 제1082호, 2017.3.22)

○개정항목 및 개정사유

연번	항목	개정사유
1	제2조(용어의 정의) : 주관부서, 주무부서	· 기부금 관리 및 운영 부서 변경으로 인한 내용 변경
2	제2장 기부금심의운영위원회 제2조(구성) : 위원 구성	· 업무분장 조정으로 인한 위원회 위원 변경, 위원장 대직자 변경
3	제5조(위원회의 소집) : 2000만원 미만 의결 건	· 업무분장 조정으로 인한 2000만원 미만 심의 건의 전결권자 및 임시 수행자 변경

○개정내용

변경 전	변경 후
<p>제2조(용어의 정의) 이 내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주관부서 : 기부금 관리 및 운영 업무의 주관부서로서 재단 업무분장 내규에 따라 DDP경영단 상생본부 마케팅팀이 된다.</p> <p>2. 주무부서 : 기부금 관리 및 운영 업무와 연관되어 처리하여야 할 업무의 담당 부서를 말하나, 예산통제 및 회계는 예산 및 회계관리 부서가 되고, 조건부기부금의 경우 수혜자 협의 및 연락 업무 등은 해당 기부 및 교부 건의 사업부서가 담당한다. 단, 그 해당부서가 불분명할 경우 DDP경영단 상생본부 마케팅팀이 된다.</p>	<p>제2조(용어의 정의) 이 내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주관부서 : 기부금 관리 및 운영 업무의 주관부서로서 재단 업무분장 내규에 다른 업무소관부서가 된다.</p> <p>2. 주무부서 : 기부금 관리 및 운영 업무와 연관되어 처리하여야 할 업무의 담당 부서를 말하나, 예산통제 및 회계는 예산 및 회계관리 부서가 되고, 조건부기부금의 경우 수혜자 협의 및 연락 업무 등은 해당 기부 및 교부 건의 사업부서가 담당한다. 단, 그 해당부서가 불분명할 경우 DDP경영단 상생본부 마케팅팀이 된다. <삭제></p>
<p>제3조(구성)</p> <p>① 기부심의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5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운영한다.</p> <p>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디자인경영단장으로 한다. 단, 디자인경영단장 부재 시 DDP경영단장, DDP상생본부장 순으로 권한을 위임 받아 그 역할을 대행한다.</p>	<p>제3조(구성)</p> <p>① 기부심의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5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운영한다.</p> <p>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디자인경영단장으로 한다. 단, 디자인경영단장 부재 시 DDP경영단장, 경영본부장, DDP상생본부장 순으로 권한을 위임 받아 그 역할을 대행한다.</p>

<p>③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DDP상생본부장, 패션문화본부장, 경영본부장, DDP 마케팅팀장을 당연직으로 하되, 별도의 위촉위원을 둘 수 있다. 단, 위촉위원은 대표이사의 추천으로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p> <p>④ 위원회의 간사는 주무부서 기부업무 담당자로 한다.</p>	<p>③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DDP경영단장, DDP상생본부장, DDP운영본부장, 패션문화본부장, 경영본부장을 당연직으로 하되, 별도의 위촉위원을 둘 수 있다. 단, 위촉위원은 대표이사의 추천으로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p> <p>④ 위원회의 간사는 업무소관부서장으로 한다.</p>
<p>제5조(위원회의 소집)</p> <p>① 기부금약정서 및 교부신청서가 접수되면, 위원회의 간사는 내부 품의를 통해 해당 기부금품의 접수 및 교부신청 건을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 위원회 소집을 요청한다.</p> <p>② 심의·의결 금액이 2,000만원 미만일 경우, 위원회의 간사는 DDP경영단 상생본부장 의 전결로 위원회를 소집을 요청할 수 있으며, DDP경영단 상생본부장이 위원장직을 임시 수행한다. 단, 위원회 소집결과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사후 보고하고 승인을 받는다.</p> <p>③ 대표이사는 기부금의 운영 사항 점검 등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p>	<p>제5조(위원회의 소집)</p> <p>① 기부금약정서 및 교부신청서가 접수되면, 위원회의 간사는 내부 품의를 통해 해당 기부금품의 접수 및 교부신청 건을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 위원회 소집을 요청한다.</p> <p>② 심의·의결 금액이 2,000만원 미만일 경우, 위원회의 간사는 경영본부장의 전결로 위원회를 소집을 요청할 수 있으며, 경영본부장이 위원장직을 임시 수행한다. 단, 위원회 소집결과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사후 보고하고 승인을 받는다.</p> <p>③ 대표이사는 기부금의 운영 사항 점검 등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p>
<p>제7조(의결서 작성) 주무부서의 장은 위원회 종료 후, 제출된 기부금 채납 및 교부신청 건에 대한 의결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으로부터 기명날인을 받아야 한다.</p>	<p>제7조(의결서 작성)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 종료 후, 제출된 기부금 채납 및 교부신청 건에 대한 의결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으로부터 기명날인을 받아야 한다.</p>
<p>제8조(회의록 및 결과보고서)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의 의결사항에 대한 회의록 또는 당해 기부 및 교부 처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장 및 주관부서에게 보고하고 보존하여야 한다.</p>	<p>제8조(회의록 및 결과보고서)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의 의결사항에 대한 회의록 또는 당해 기부 및 교부 처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장 에게 및 주관부서에게<삭제> 보고하고 보존하여야 한다.</p>

3. 신입이사 임명 보고


○ 신입이사 7명 임기 : 2017.5.12.~2020.5.11.(3년)

○ 비상임이사 : 총 6명

- 패션 1명, 건축 1명, 법률 1명, IT 1명, 영상영화 1명, 디지털미디어 1명

연번	분야	성명	생년	주요 경력
1	패션	 박춘무	1954	현) 데무 디자인실 감사
2	건축	 이충기	1961	현) 서울시립대 건축학부 교수 전) 서울시 건축문화제 2016 총감독 전) (주)한메건축사사무소 대표
3	법률	 좌세준	1965	현) 법무법인 한맥 변호사 현)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전)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
4	IT	 김승언	1979	현) 네이버(주)디자인센터 센터장 전) 프리챌(주) 디자인팀 디자이너 전) NHN엔터테인먼트 디자인실 이사
5	영상 영화	 방은진	1965	현) 모베타필름 주식회사 대표(영화감독) 현) 강원영상위 위원장 전) 성신여자대학교 미디어영상연기 교수
6	디지털 미디어	 한문철	1958	현) 라이너전성기재단 상임이사 전) 서울시 시의회 사무처장(1급) 전) 서울시 문화디자인본부장(2급)

○ 근로자이사 : 총 1명

연번	입사일	성명	생년	주요 경력
1	2014.10	 정승연	1980	현) 서울디자인재단 패션산업팀 선임 전) (주)까사에나 사원 전) (주)건국휴먼 사원